발간등록번호
전북교육 2022 - 142

꿈을 꾸고 도전하는 학교 함께하는 김제교육

2022 김제유아교육계획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Jeollabuk-do-GIMJE Office of Education

목 차

Ⅰ. 전라북도 교육 기본 방향 ····· 1
Ⅱ. 전라북도 유아교육 기본 방향 ····· 2
Ⅲ. 김제교육 기본 방향 ····· 3
Ⅳ. 김제유아교육 기본 방향 ····· 4
Ⅴ. 2022 김제유아교육 환경 ····· 5
Ⅵ. 2021 김제유아교육 주요 성과 ····· 6

Ⅶ. 2022학년도 핵심과제별 주요 사업

제1장 놀이를 통해 즐겁게 배우는 유아

1-1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 13
1-2 원격수업 지원 ····· 16
1-3 자율선택과제 운영 ····· 18
1-4 실내 누리놀이터 조성 지원 ····· 22
1-5 유치원 놀이마당 운영 ····· 24
1-6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운영 ····· 25
1-7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27
1-8 방과후 과정 담당인력 지원 ····· 29
1-9 돌봄교실 운영 지원 ····· 30

제2장 자율과 책임으로 행복한 교원

2-1 유치원 교원 연수 ····· 35
2-2 유치원 교원 동아리 운영 ····· 36
2-3 컨설팅 지원 ····· 37
2-4 유치원 마음모아 소통교실 ····· 39
2-5 교원임용 및 인사방식 개선 ····· 40
2-6 교육실습협력유치원 운영 ····· 40
2-7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 등 ····· 41
2-8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인건비 보조금 지원 ····· 45
2-9 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 표창 ····· 45

제3장 소통과 공감의 따뜻한 교육행정

3-1 유아학비 지원 ····· 49
3-2 다문화 유아 및 가정에 대한 지원 ····· 50
3-3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 51
3-4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 ····· 53
3-5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 ····· 54
3-6 유치원 신·증설의 적정화 ····· 56
3-7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정착 ····· 58
3-8 4세대 지능형 나이스(유치원) 기반 구축 ····· 59
3-9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정적 정착 ····· 60
3-10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운영 ····· 61
3-11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 62

제4장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4-1 유치원(기관) 평가 운영 ····· 67
4-2 유치원 보건환경 개선 ····· 68
4-3 유치원 급식안전 강화 ····· 68
4-4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 ····· 70
4-5 행복안전유치원 운영 ····· 70
4-6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및 교육 ····· 71
4-7 유아 성교육 내실화 ····· 73

제5장 협력과 지원으로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5-1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 77
5-2 유치원 자원봉사자 운영 ····· 77
5-3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지원
◩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활동 지원 ····· 78
◩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 지원 ····· 80
◩ 행복을 더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 82

● 2022학년도 김제유아교육 주요 내용 일정표 ····· 85

【부 록】

1. 출결관리 ····· 89
2. 학적관리 ····· 90
3. 생활기록부 ····· 91
4. 유치원 규칙 ····· 92
5. 유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93
6. 계약제교원 임용 ····· 96
7. 각종 위원회 및 비치 장부 ····· 99
8. 교직원 의무 연수 ····· 101

Ⅰ. 전라북도 교육 기본 방향

Ⅱ. 전라북도 유아교육 기본 방향

비전 가고 싶은 유치원 행복한 교육공동체+

목표
- 유아교육 기회 평등 보장
-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발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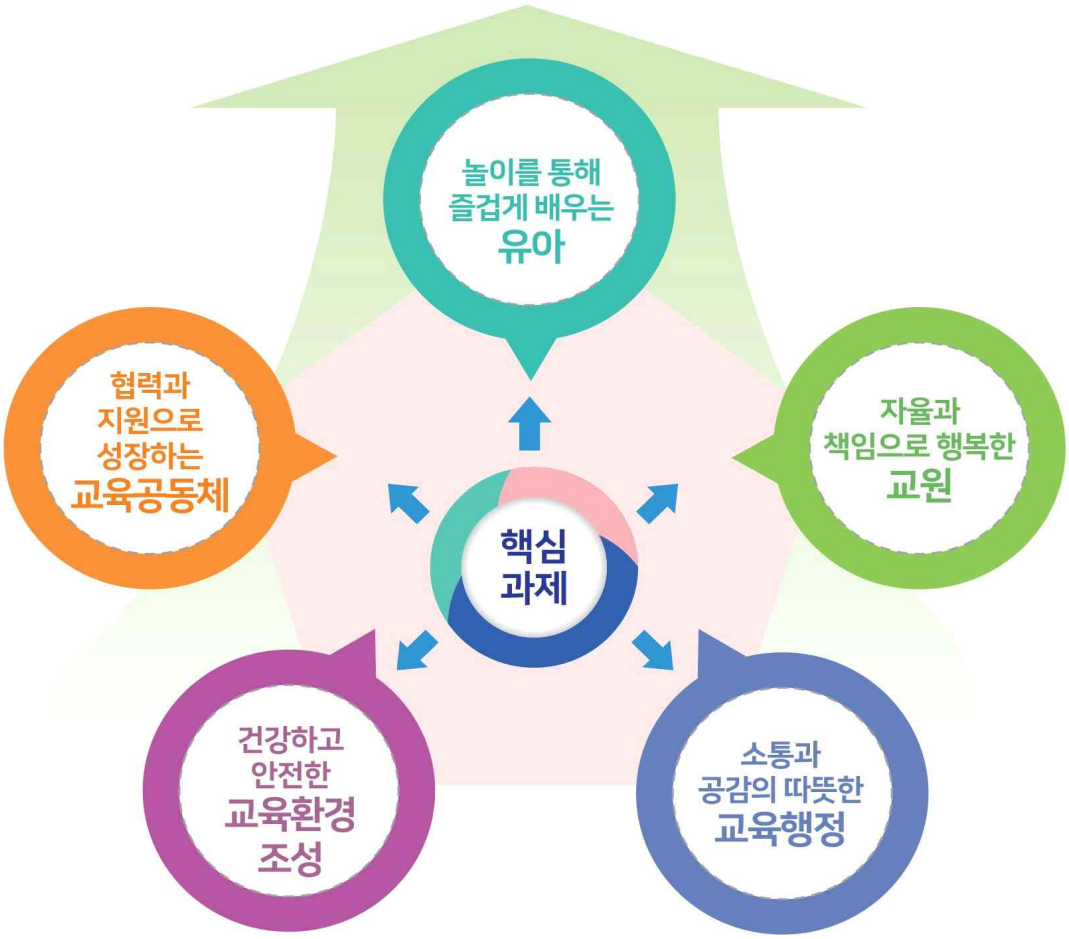

Ⅲ. 김제교육 기본 방향

교육 비전
꿈을 꾸고 도전하는 학교
함께하는 김제교육
교육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주요 정책
학부모 부담 최소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교권 존중과 신뢰하는 학교
공정한 교육행정
차별 없는 교육 실현
정책 과제
안전한 학교
미래혁신교육과 참된 학력신장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Ⅳ. 김제유아교육 기본 방향

비 전

꿈을 꾸고 도전하는 유치원
함께하는 김제유아교육

목 표

-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유아
- 신뢰 · 나눔 · 공감으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Ⅴ. 2022 김제 유아교육 환경

1. 김제의 지리적 특성

가. 면적 : 544.90㎢ (전북도의 6.7%) (동서54.9㎞ 남북33.38㎞)

▸ 도시지역 8%, 농림지역 44.8%, 관리지역 42%, 자연환경보전지역 5.2%

나. 인구 : 81,177명(42,398세대) * 2021.9월말 현재

다. 지형 및 기후

▸ 지세 : 동남쪽이 높고 서북쪽이 낮음

▸ 기후 : 대륙성 및 해안성

▸ 산 : 모악산(793.5m), 상두산(573.3m), 구성산(487.6m)

▸ 강 : 만경강, 동진강

라. 지역특성 : 새만금의 중심, 혁신도시에 인접한 국가균형발전의 최적지로 대한민국 대표 곡창지대인 생명의 땅, 한민족의 곡간이자 식량 안보지역, 전북권 T자형 개발축의 중심, 광역 교통망을 갖춘 교통・물류 중심지

2. 김제 유치원 현황

(2021. 1. 1.기준)

설립별	유치원수	학급수	유아수(예정)	비고
공립	32	39	333	
사립	4	20	348	
계	34	59	681	

VI. 2021. 김제유아교육 주요 성과

1.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사업명	주요 성과	발전방향
교원역량강화 지원으로 전문성 신장	▸ 교원의 자율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유치원 교원연수 지원: 7회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행력 강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체제 강화	▸ 유치원 정책사업 추진 - 전라북도 김제유아교육계획 설명회 실시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지원: 16개원, 24회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 놀이중심 교육활동 활성화 및 교육과정 운영 전문성 신장 연수 지원 - 자율선택과제 운영 지원: 36개원 - 찾아가는 놀이마당: 27회(신체 13, 예술 8, 책: 6) ▸ 유치원 동아리 운영: 6팀 ▸ 마음모아 소통교실: 5권역 운영 - 권역별 교육과정, 부모교육, 다양한 행사 공동추진 - 수업컨설팅, 동료장학 등 권역별 정보 공유를 통한 자긍심 고양	동아리 및 권역 활동 활성화로 교육공동체 형성 및 수업 혁신 지원
방과후과정 지원 체제 강화	▸ 방과후과정 운영: 36개원 ▸ 방과후과정 지도·점검: 36개원(공립 32, 사립 4)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 운영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 배치	▸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 배치 -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 인건비 지원 - 사립유치원 원당 2명 지원	
돌봄교실 운영 지원 체제 강화	▸ 돌봄 교실 운영: 6개원 - 저녁 돌봄교실 운영: 사립유치원 2개원 - 연장 돌봄교실 운영: 공립 2개원, 사립 2개원	돌봄교실의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사업명	주요 성과	발전방향
사립유치원 교사 근무 여건 개선	▸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보조 지원 - 담임수당 및 단기대체 강사비 ▸ 사립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복지 규정 마련

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	▸ 유아교육 발전 유공교원 교육감 표창: 1명	
교육실습협력 유치원 운영	▸ 교육실습협력유치원 지정, 운영: 1개원 - 가산점 인정 교원: 4명	교육실습협력 유치원 운영 지침 제공

3. 유아교육 기회 및 기반 구축

사업명	주요 성과	발전방향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	▸ 유아학비 지원 - 교육과정: 공립 80천원, 사립 260천원 - 방과후과정: 공립 50천원, 사립 70천원 (총 공립: 130천원, 사립: 330천원)	유아학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 실시
특수교육 대상 유아 무상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일반학급 배치) - 사립: 361천원	무상 의무교육 실현과 학부모 교육비 경감
사립유치원 지원	▸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정책 수립 - 유치원 원비 동결 유치원 지원 - 원비 점검 실시(4개원, 연2회) -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유도	유치원 원비 안정화정책 지속 추진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정착	▸ 기관 단계별 공시자료 검증 실시 - 유치원→교육지원청→교육청→KERIS ▸ 정보공시 자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 협력체계 마련

4. 유치원 운영 적정화

사업명	주요 성과	발전방향
유치원(기관) 평가 지원	▸ 유치원(기관) 평가 실시 - 평가대상: 공·사립유치원 전체 - 평가방법: 자체평가 * 교육공동체 중심 자체평가로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과정 성찰 기회 확대 및 현장 부담 경감	유치원 자치에 의한 자체평가 성실 이행
유치원운영 위원회 지원	▸ 공·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3월 ▸ 유치원 운영위원회 연수 지원	유치원운영위원 대상 체계적인 연수 실시
유치원 보건환경 개선	▸ 유치원 환경위생 점검 분기별 실시 -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점검 실시	교육환경개선 지원 강화

유치원 급식안전 개선	▸ 유치원 급식 지도·점검 실시 -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점검 실시: 36개원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실시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및 유치원 안전 관리 강화 -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활용 자체 점검 실시	안전관리 강화
행복안전유치원 운영 지원	▸ 행복안전유치원 운영: 25개원(공립 9, 사립 16) - 유치원별 사업비 및 운영비 7,500천원 지원 -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 연수(80명)	

5.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사 업 명	주요 성과	발전방향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한 유아 모집 - 공·사립유치원 36개원 참여	

Ⅶ. 2022 핵심과제별 주요 사업

1 놀이를 통해 즐겁게 배우는 유아

1-1.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1-2. 원격수업 지원
1-3. 자율선택과제 운영
1-4. 실내 누리놀이터 조성 지원
1-5. 유치원 놀이마당 운영
1-6.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운영
1-7.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1-8. 방과후 과정 담당인력 지원
1-9. 돌봄교실 운영 지원

1-1.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 추진 목적

❍ 놀이가 배움이 되는 교육활동 운영
❍ 유아 주도적·자발적 놀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본질 회복
❍ 교육과정 운영 시간 준수로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 추진 근거

❍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0-02호)
❍ 2022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교육부)

□ 추진 내용

추진 기관	중점 추진 사업
도교육청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지원 계획 수립·시행 -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유아의 자율성 및 창의성 신장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강화 · 놀이를 통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적극 지원 -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운영 ○ 즐거운 배움이 있는 유아발달 지원 - 「쓰담쓰담」마음동행 유아발달 지원 ○ 미래교육 내실화 지원 -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자료 개발·보급 - 미래형 거점유치원 운영 -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 ○ 원격수업 지원 - 감염병 관련 원격/등원수업 전환 지원 - 전라북도교육청 유치원 원격수업지원단 조직·운영 - 원격수업 지원자료 개발 및 누리집 탑재(매월) ○ 자율선택과제 운영 지원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교육지원청 배정 ○ 교원 수업동아리 조직·운영: 교육지원청 배정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지원단 조직·운영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지원자료 개발 및 누리집 탑재(매월) ○ 교육과정 실행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 ○ 현장중심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안전한 유치원 운영 -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하는 안전교육 생활화 - 매일 교육과정 시작 전 출결 확인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교육지원청	○ 지역 특성을 살린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지원 계획 수립·시행 - 교육과정 운영 시간 4~5시간 준수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컨설팅 - 1일 2시간 이상 충분한 놀이시간(바깥놀이 포함) 확보 · 운영 점검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연수 추진(유아·놀이중심 교육) ○ 교원 자율연수 및 현장 중심 컨설팅을 통한 유아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국가·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실시 ○ 다문화가정 유아 등에 대한 교육 및 학부모 참여 활성화 지원 ○ 놀이 심화·확장을 지원하는 교사의 실행력 향상 컨설팅 실시 ○ 감염병 관련 원격/등원수업 전환 지원 ○ 단위유치원 원격수업계획 수립 여부 컨설팅 실시
유치원	○ 단위 유치원 자율성에 기반한 유치원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 새학년도 교육과정 세움주간 운영 - 교육과정 운영 시간 4~5시간 준수 ※ 교육활동 시작 시간: 오전 9시 전후(30분 조정 가능) - 교육과정 운영 시 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1일 2시간 이상 충분한 놀이시간(바깥놀이 포함) 확보 ※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놀이시간을 2시간 이상 확보하되, 날씨와 계절, 유치원 상황, 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 - 관련 법령 및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 교육과정 반영 ※ 교직원 의무연수(p.101~102 참고) ○ 유아 발달에 적합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생태감수성, 인성·인권감수성, 문화감수성) - 놀이지원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교육과정 내 특성화프로그램 금지(미 준수 시 행정지도 및 조치 강화) ○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한(유아의 경험과 연계 구성) 교육과정 운영 - 기후-환경, 바른 인터넷 사용, 아동학대, 성폭력, 양성평등, 다문화, 안전 등 ○ 원격수업계획 수립 및 필요시 유아·놀이중심 원격수업 운영 ○ 교육활동 실행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장학활동 실시

□ 중점 추진 사항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모든 유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유아·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유아가 주도하여 이끌어 가는 놀이가 배움이 되는 교육여건 지원
  - ·유아와의 상호작용 활성화 및 유아 관찰과 기록을 통한 평가 실시
  - ·유아의 흥미와 발달수준, 일상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또래간 상호작용과 놀이중심의 교육활동 운영
  -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고 통합적으로 발달하도록 지원
  - ·유아 인성·창의교육을 강조하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 지원

❍ 국가·사회적 요구 반영

-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생태교육 실천(생태감수성)
  ·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 실천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교육 실시
  · 실천하는 지구사랑 환경사랑교육 실시(가정에서, 유치원에서, 혼자서, 다함께)
  ·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생활화하는 환경교육 실시
- 유치원 인권·인성·안전교육 실시(인성·인권감수성)
  · 7대 학교안전교육 내용 교육과정에 반영 및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 교육부 개발 자료 및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활용
- 다문화 유아와 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문화감수성)
  · 다름에 대한 존중, 문화 이해 교육, 언어교육, 학부모 교육, 교원 교육 등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 학부모 유아교육 참여 활성화

- 유아 발달 단계 및 유아교육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 학부모 지원 자료 안내
  ·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방,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집콕! 놀이콕!, 아이누리포털(www.I-nuri.go.kr) 활용
- 전라북도교육청 2022. 학부모 운영계획에 따른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활용 및 참여 안내
- 교육기부, 모니터링단 및 동아리 운영, 지역사회 인프라 교육활동에 활용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1-2. 원격수업 지원

* 원격수업: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의미함
[출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 안내(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685, 2020.5.)

□ 추진 목적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학사운영 지원

❍ 소외되는 유아 없이 모든 유아의 학습권 및 놀권리 보장

□ 추진 근거

❍ 2022 전라북도 유아교육계획(전북교육 2022-099)

□ 추진 내용

❍ 유치원 시설 이용 제한 발생을 대비하여 유치원 실정에 맞는 원격수업계획 사전 마련
- 개인단위 등원중지 유아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대체학습) 제공 방법 마련

❍ 유치원(연령, 학급 등) 등원이 중지될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
- 단위유치원(교육지원청)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및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 전라북도교육청 코로나19 대책본부 상황실,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담당자와 협의 필수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 감염병 관련 원격/등원 수업 전환 지원 • 유치원원격수업지원단 조직·운영 • 원격수업 지원자료 개발 및 탑재**	➔	• 감염병 관련 원격/등원 수업 전환 지원 • 단위유치원 원격수업계획 수립 여부 컨설팅	➔	• 단위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원격수업 운영계획*** 수립 • 원격수업 운영 - 비상 시 대비 유아 수만큼 놀이꾸러미 비치 등

-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누리집 탑재(매월)
  ·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교육정보/학교교육/유아교육/원격수업지원방

-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
  · 원격수업 시 유치원별 또는 학급별 ‘유아 놀이 배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 가정으로 안내하여 원격수업의 유치원-가정 연계 교육 강화
  · 실물자료 중심 놀이꾸러미, 온라인 콘텐츠*, EBS 1TV 방송 <우리집 유치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을 통한 원격수업 운영
  · 온라인 학급방 구축·접속 확인, 연락망 구축 등 가정 소통 체계 점검 및 원격수업 관련 사항(출결 및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학부모 사전 안내
  · 1주일 내내 원격수업 지속 시, 주 1회 이상 유·무선 소통 실시
- 소통 시 유아의 건강상태·놀이 상황 확인 및 상담 등 실시
- 가정과의 소통 시 부모(보호자)뿐만 아니라 유아와의 소통을 통해 원격수업 기간 내 유아의 심리·정서 지원
- 교육지원청: 단위 유치원 원격수업계획 수립 여부 컨설팅
- 유치원: 2022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원격수업을 포함한 계획 수립

❍ 도교육청 미래형 교육과정 아이디어 공유 및 자료 활용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교육정보/학교교육/유아교육/유아교육나눔터)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예시)

■ (놀이 꾸러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놀이의 연속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실물자료 제공
■ (실시간 쌍방향 소통) 놀이소개, 놀이 상황 공유, 유아의 건강상태 확인 등으로 활용
■ (교육청·진흥원 콘텐츠) 누리과정포털(i-nuri), 교육청(진흥원) 누리집 등 탑재 콘텐츠
■ (교육 방송 콘텐츠) EBS TV, 유튜브 클립 영상 등 교육과정과 연계콘텐츠 등 활용
■ (교사 제작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놀이, 안전, 학부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활용
■ (대여 지원) 유치원의 교재·교구 및 도서대여 서비스 등 제공
■ (학부모 상담 및 지원) 유아 놀이의 교육적 의미, 지원 관련 학부모 역할 안내, 온라인 상담 등 운영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1-3. 자율선택과제 운영

□ 추진 목적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유치원 구성원의 자율적인 선택과 참여로 교육과정 내실화

□ 추진 근거

❍ 2022 전라북도 유아교육계획(전북교육 2022-099)

□ 추진 방향

❍ 규모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과제 선택

※ 공립유치원: 경상운영비 지원, 사립유치원: 신청 후 예산 교부

❍ 단위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일과 중 교육활동으로 전개

❍ 4개 과제 이외 자유 주제 선정 시 유아·놀이중심 교육활동 범위 내에서 선정

❍ 유치원 규모별 예산 차등 지원

□ 추진 내용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 수요조사 및 예산 확보 · 「유치원 자율선택과제」 운영 계획 수립 · 예산 배분 · 자율선택과제 운영 결과 나눔·공유 기회 제공 및 차년도 반영	· 예산 교부 · 운영유치원 지원 및 컨설팅 실시 권장 · 운영 결과 취합 제출	· 참여 신청서 제출 - 참여 희망 유치원은 4개의 과제 중 선택 - 4개 과제 이외 자유 주제 선정 가능 · 「유치원 자율선택과제」 실행 휴 운영 결과 제출

가. 다붓다붓 두레놀이

* 다붓다붓 두레놀이는 여러 명의 유아가 협업하며 놀이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함
- 다붓다붓: 여럿이 가깝게 있다는 뜻의 우리 말
- 두레놀이: 공동체놀이의 우리 말

□ 추진 목적

❍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체험중심의 교육활동 전개

❍ 유아·놀이·체험중심 교육활동 활성화

□ 추진 방향

❍ 유아·놀이중심 교육활동 전개 시 유아 간 협력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
❍ 유아가 친구와 놀이하며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놀이 지향
❍ 교원연수, 교육활동(수업)참관, 현장체험학습 실시
❍ 유치원 및 지역 특색에 맞는 다붓다붓 두레놀이 운영

□ 추진 내용

운영과제	세부 운영 내용
환경조성	- 실내·외 놀이와 체험중심 환경 조성
놀이 및 지원	- 2022 유치원 운영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 - 유아·놀이중심 교육활동 전개 - 다붓다붓 두레놀이 교육계획 수립 및 활동·내용·평가 운영 - 다붓다붓 두레놀이 교육활동 컨설팅 - 유아·놀이중심 교육활동 연수
수업나눔	- 다붓다붓 두레놀이 교육활동 나눔 및 참관 - 운영사례 공유 및 나눔
실천중심의 교육활동	- 다양한 실내·외 놀이 및 체험 활동 - 놀이를 통한 나눔과 실천 교육활동 전개
유의점	▪「**세부 운영 내용**」을 반영하여 자율선택과제 운영 계획 수립 후 유아·놀이중심으로 운영

나. 자연이랑 오감놀이

* 자연이랑 오감놀이는 오감 체험을 위한 비구조화된 자연친화적 바깥놀이를 의미함

□ 추진 목적

❍ 오감을 활용한 자연 연계 교육활동 활성화로 유치원·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아·놀이중심 통합교육과정 운영
❍ 유아의 꿈과 인성을 키우는 자연 연계 오감놀이 전개

□ 추진 방향

❍ 자연과 연계한 오감활용 바깥놀이 활성화
❍ 자연 속에서 오감으로 교감하는 실천중심의 교육활동 전개
❍ 오감을 활용한 충분한 자연탐색으로 상상력과 창의성 발현
❍ 자연 연계 활동 및 바깥놀이 활동시간 연장 운영

□ 추진 내용

운영과제	세부 운영 내용
환경조성	- 유치원 주변에서 오감을 활용한 자연 연계 교육활동 실시 장소 선정 - 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
놀이 및 지원	- 2022 유치원 운영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 - 유아발달에 적합한 자연 연계 교육계획 수립 및 활동·내용·평가 운영 - 오감을 활용한 자연중심의 교육과정 지원 컨설팅 - 자연과 연계한 놀이중심 교육 실시를 위한 연수
수업나눔	- 오감을 활용한 자연과 연계한 교육활동 나눔 및 참관 - 운영사례 공유 및 나눔
실천중심의 놀이활동	- 오감을 활용한 자연 연계 놀이 - 다양한 체험활동, 생태 체험활동 - 유치원·가정·지역사회 간의 소통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교육 - 유아들이 만들어 가는 다양한 자연 놀이 활동 전개
유의점	▪「**세부 운영 내용**」을 반영하여 자율선택과제 운영 계획 수립 후 유아·놀이중심으로 운영

다. 도란도란 책 놀이

* 도란도란 책 놀이는 책과 연계된 놀이를 친구들과 함께해보는 교육활동을 의미함
•도란도란: 여럿이 함께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소리나 모양

□ 추진 목적

❍ 유아가 책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기회 제공
❍ 책 놀이를 통한 유아의 자기 주도적 배움 지원

□ 추진 방향

❍ 교육과정과 유아 발달에 맞는 책 놀이 프로그램 운영
❍ 놀이와 연계한 다양한 책 놀이 활동 전개
❍ 교원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기회 제공

□ 추진 내용

운영과제	세부 운영 내용
환경조성	- 유치원 실내·외 장소 구분 없이 책 놀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놀이 및 지원	- 2022 유치원 운영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 - 유아발달에 적합한 책 놀이 교육계획 수립 및 활동·내용·평가 운영 - 책과 놀이를 연계한 교육활동 컨설팅 - 유아 책 놀이 실시를 위한 연수
수업나눔	- 책 놀이와 연계한 교육활동 나눔 및 참관 - 운영사례 공유 및 나눔
실천중심의 놀이활동	- 책 놀이와 연계한 놀이활동 ·(책을 활용한) 블록 쌓기, 기찻길 만들기, 집 만들기, 도미노 놀이 등 - 다양한 책 놀이 프로그램 운영 ·대여 사업, 동화책 읽어주기 등
유의점	■「**세부 운영 내용**」을 반영하여 자율선택과제 운영 계획 수립 후 유아·놀이중심으로 운영

라. 지구사랑 환경사랑

* 지구사랑 환경사랑은 일상생활 속에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함

□ 추진 목적

❍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를 위한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생태교육을 통해 지구 살리기 실천
❍ 유아기의 생태교육 일상화를 통해 환경과 생명의 가치 내면화

□ 추진 방향

❍ 유아가 주도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지구사랑 환경사랑 활동 전개
❍ 놀이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태교육 운영
❍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놀이 · 활동의 기회 제공

□ 추진 내용

운영과제	세부 운영 내용
환경조성	- 유치원 주변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조성
놀이 및 지원	- 2022 유치원 운영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 - 유아발달에 적합한 지구사랑 환경사랑 교육계획 수립 및 활동·내용·평가 운영 - 놀이를 연계한 지구사랑 환경사랑 교육활동 컨설팅 -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교육 연수
수업나눔	- 지구사랑 환경사랑 연계한 교육활동 나눔 및 참관 - 운영사례 공유 및 나눔
실천중심의 놀이활동	- 일상생활 속 실천 가능한 활동 선택 (지역적 여건 및 유치원 실정을 고려한 활동 선정) 예) 에너지 지킴이, 초록유치원 가꾸기, 지구나이 늘이기 등 - 지역사회 자원 활용(유관기관) · 관련된 장소 체험학습, 환경전문가 초빙 등
유의점	■ 「**세부 운영 내용**」을 반영하여 자율선택과제 운영 계획 수립 후 유아·놀이중심으로 운영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1-4. 실내 누리놀이터 조성 지원

□ 추진 목적

❍ 내실있는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건강과 행복권 보장
❍ 대근육 놀이 공간 조성을 통한 유아의 놀이 활성화로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발달 도모
❍ 미세먼지, 황사, 우천, 혹서기, 혹한기 대비 놀이 공간 조성으로 유아의 놀이 활동 보장

□ 추진 근거

❍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2019 개정 누리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 추진 방향

❍ 실내 놀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유치원 중 놀이터 조성 공간이 있는 희망 유치원 선정·운영

❍ 대상 유치원 지역 배분 및 교육지원청 추천을 통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운영

❍ 유아의 대근육 활동을 위한 놀이공간 구성으로 모험과 도전을 하면서 자유롭게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경험 제공

❍ 기후 등에 상관없이 유아가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제공

❍ 선정된 유치원은 놀이공간 조성 후, 운영사례 일반화 노력(도교육청 누리집 탑재, 타 기관 공개 등)

❍ 향후 희망 유치원 순차적 지원 및 대상 유치원 확대

□ 추진 내용

❍ 운영 기간: 2022. 3. ~ 2023. 2.

❍ 대상 유치원: 공・사립유치원

※ 유치원수 고려하여 지역 배분 및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추천

❍ 지원 예산: 총 100,000천원(유치원별 20,000천원)

※ 필요시, 유치원 대응투자 가능

❍ 지원 조건

- 스프링클러 설치(유치원별 면적 기준에 따른 설치조건 참조)
- 실내 누리놀이터 조성 공간 확보(유휴 보통 교실, 복도 공간, 기존 보완 등)

※ 2021년 선정 유치원은 제외

❍ 추진 내용

- 운영 계획서 제출: 3월(유치원)
- 대상 유치원 선정 및 추천: 3월(교육지원청)
- 예산 지원 및 컨설팅: 4월(도교육청)
- 실내 누리놀이터 설치: 4월~11월(유치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실내 누리놀이터 조성 지원 계획 수립 ・지역별 예산 재배정 ・실내 누리놀이터 선정 유치원 컨설팅 지원 ・진행 상황 시설 점검 및 현장 방문 ・운영 결과 나눔 및 다음 계획에 반영 ・만족도(교직원, 학부모) 조사 실시 ・자료 공유 및 일반화 확산	・실내 누리놀이터 선정 심사 계획 수립 ・대상 유치원 선정 및 추천 ・해당 유치원에 예산 배분 ・진행 상황 시설 점검 및 현장 방문 ・자료 공유 및 일반화 확산	・실내 누리놀이터 신청서 제출 ・운영 계획 수립(선정시) ・실내 누리놀이터 컨설팅 실시 ・실내 누리놀이터 설치 ・안전검사 실시 ・운영 결과 제출 ・자료 공유 및 일반화 확산

※ 세부사항은 추후 공문 시행

1-5. 유치원 놀이마당 운영

□ 추진 목적

❍ 놀이와 체험활동 과정을 통해 질서, 협동, 즐거움, 성취감, 창의성 신장 등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 지원

❍ 유아의 흥미와 발달 수준에 맞는 또래간 상호작용 및 놀이중심 교육활동 활성화

□ 추진 근거

❍ 2021학년도 김제교육계획(전북교육 2022-067)

□ 추진 방향

❍ 코로나19 밀집도 최소화 방안 시행에 따라 대규모 활동을 지양하고 소규모 형태 운영

❍ 유아의 흥미와 요구,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유아중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치원 의견 반영한 활동 장소 및 내용 선정·운영

❍ 참여하는 유아들의 깊은 탐색과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유아・놀이중심 활동으로 프로그램 계획·적용

□ 추진 내용

❍ 운영 기간: 2022. 4 ~ 11

❍ 대상 유치원: 공・사립유치원(인근 유치원 간 협의 후 연합하여 소규모 운영)

❍ 운영 내용: 신체・운동 놀이 및 예술놀이, 책놀이, 과학놀이

❍ 프로그램 내용

순	주 제	내 용
❶	너랑 나랑! 신체놀이	● 친구랑 함께하는 신나는 신체놀이
❷	다양한 악기와 함께하는 예술놀이	● 다양한 악기와 함께하는 음악놀이
❸	모험과 환상의 책놀이	● 행복한 책놀이
❹	호기심 팡팡! 과학놀이	●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신기한 과학

1-6.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운영

□ 추진 목적

❍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정서발달 및 행복감 증진
❍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학부모 만족도 제고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 2022 전라북도 유아교육계획(전북교육 2022-099)

□ 추진 방향

❍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실수요자 중심의 운영
❍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놀이중심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편성·운영
❍ 유아 사교육 문화 개선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중심 활동 및 수익자 부담경비가 발생하는 과도한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지양 원칙

□ 추진 내용

❍ 운영계획
- 방과후 과정 연간계획 수립 및 유치원 운영계획에 반영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

① 유치원 여건 및 학부모 수요 조사 등을 반영하여 **방과후 과정 연간 운영 계획 수립**
②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유아교육법」 제19조의4)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계획(미 참여 유아 대책 포함), 운영시간, 운영 장소, 참여대상, 인력배치, 소요비용, 안전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 포함
③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유아교육법」 제19조의3)
④ 방과후 과정 운영 사항 **정보공시 탑재**(「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의2)
- 운영 시간, 학급편성, 참여유아 수, 방과후 과정 교육비용,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비 등

❍ 운영일수 및 시간
- 운영일수: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유치원 실정에 맞게 운영
- 운영시간: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되, 개별 보호자 동의하에 1시간 이내에서 이용 시간 조정* 가능

※1시간 이내의 이용 시간 조정은 전체 유아 대상 일괄적용이 아닌, 개별 유아 대상 적용 시간임

❍ 학급편성: 전라북도교육청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적용

❍ 이용대상

-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
- 학부모 수요 및 유치원별 수용 여건에 따라 교육공동체에서 참여 대상 결정

❍ 운영내용

-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놀이중심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편성·운영
- 유아 발달을 저해하는 학습 중심 활동 및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하는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지양 원칙(단, 학부모 수요에 따라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편성 도교육청 기준 반드시 준수)**

❍ 안전관리

-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 매일 출결상황 파악
- 참여 유아는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학부모 동반 귀가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성인) 사전 지정제 실시
- 건강 이상 등 특이사항 발견 시 학부모에게 즉시 안내
-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간식지도 및 관리(방학 중 방과후 과정 급식 포함)
  - ■ 보존식 관리(p. 69 참고)

❍ 방학 중 급식 운영

- 방학 중 자체급식 권장, 자체급식 미운영 유치원은 위탁급식 활용으로 학부모 도시락 지참 불편 해소
- 공립유치원 방학 중 혼합급식 개선비 지원

<혼합급식이란?>
유치원에서 급식의 일부 제공(예: 밥)+제공하지 않는 것은 유아가 각자 지참(예: 반찬)
(가정에서 밥과 반찬 모두 가져오는 경우 포함)
※ 근거: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3761(2021.7.7.)

- 위탁급식 시, 제공 업체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계약 체결 시, 계약 담당 부서에서 업무 협조
  - ■ 위탁급식 시, 참고자료

유치원 급식 운영·영양관리 안내서(교육부) p.12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길라잡이(전라북도교육청) pp.39-47
※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

❍ 졸업식 이후 졸업생 방과후 과정 이용

- 유아는 졸업식 이후에도 학년도가 끝나는 2월 말일까지 방과후 과정 이용 대상임
- **'졸업'은 '졸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졸업은 「유아교육법」에서 **학년도가 끝나는 2월 말일**임

❍ 방과후 과정 운영 평가 계획

- (유아 평가) 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유아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
- (방과후 과정 운영 평가) 방과후 과정이 유아·놀이 중심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
- (방과후 과정 운영 결과 학부모 설문 조사) 방과후 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 후, 결과를 다음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에 반영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1-7.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수익자부담경비 발생여부 · 자체 인력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유아 경험의 확장 등을 위해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특정 분야 유아 활동

※ 학부모 수요 조사 실시 →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회의록 공개) → 프로그램 내용·학부모 부담금 등 공시

□ 추진 목적

❍ 유아발달에 적합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아의 다양한 경험 확장

❍ 학부모 수요에 따른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2022 전북유아교육계획,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

□ 추진 방향

❍ 학부모 수요에 따라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

❍ 유아 사교육 문화 개선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중심 활동 및 수익자 부담경비가 발생하는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양 원칙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운영

❍ 신청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미참여 유아 지도를 위한 대책 마련 및 관리 철저

□ 추진 내용

❍ 운영 절차

- 학부모 수요 조사 실시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회의록 공개) → 프로그램내용, 경비 등 관련 정보 공시(‘유치원 알리미’)

❍ 운영 원칙

- 유아 **1인당 주 3개 이하, 1일 1개, 30분에서 1시간 이내, 프로그램당 1회**로 운영
-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 프로그램 운영 기준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기준 및 사례>

☞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 ▸ 유치원 자체 인력 및 외부 강사를 통한 미술, 체육, 음악 등의 예체능 활동
- ▸ 별도의 교구를 구입하여 유치원 자체 인력(외부 자원봉사자 포함)이 운영하는 활동
- ▸ 유치원 자체 인력 및 외부 강사를 통해 실시하는 놀이 중심 다문화 체험 활동

※ 유치원 교직원이 특정 프로그램 및 교재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해당

❍ 프로그램 비용 산정

- 참여유아 수, 실시 횟수, 강사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유아학비(방과후 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비 내 운영으로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 지향
- 1시간 32,000원 권장(농어촌지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추가 지원 가능)
  ※ 전라북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2016. 1. 4.)

❍ 프로그램 선정 및 위탁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부모 사전 수요 조사 실시
- 설문결과에 따라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필수
- (개인위탁) 만족도 조사 80점 이상인 경우 등 총 2년 이내 연장 계약 가능
- (업체위탁)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코로나19로 사업정지한 기간에 한하여 1년 이내 범위에서 위탁 계약 변경 가능

❍ 프로그램 강사 자격

- 개인·업체위탁 강사 공통
  - ■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예정)자
  - ■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 ■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
  - ■ 기타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당해 유치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재공고 시에만 지원 가능(강사 모집 공고 시 정확히 안내)

- 외국인 계약 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검증·확인 철저

※ 외국인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할 수 있는** "회화지도(E-2) 체류자격" **외국인은 유치원에서의 활동 금지**

❍ 강사 계약 시 참고 사항

- 강사 계약 시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길라잡이'(발간등록번호 2021-546) 위·수탁 계약서 활용 가능

※ 채용계약서, 근로계약서가 아님에 유의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고용보험 가입(2022년 7월 적용 예정)
- (개인위탁)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평가를 거쳐 총 2년 미만으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으로 인한 미운영 기간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연장을 위한 계약 변경을 할 때에도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함
- (개인위탁)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적용(사업자 등록증 미제출)

  ※ 개인위탁 강사는 주 14시간까지만 가능함
- (업체위탁) 업체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과 업체소속 강사의 질 등을 우선적으로 검증

❍ 평가 및 환류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및 지도 강사별 만족도 조사 실시
-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연 1회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공개 실시
- 평가 결과는 다음 운영 계획에 반영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1-8. 방과후 과정 담당인력 지원

□ 추진 목적

❍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유자격 교사 배치

❍ 방과후과정의 내실화 구현

❍ 사교육비 경감 및 학부모의 안정적인 사회 활동 보장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확정)
❍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교원인사과-1454, 2022.1.20.]

□ 추진 방향

❍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계약제교원 배치
❍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정원 외 계약제 교원이며,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돌봄 담당

□ 추진 내용

❍ 방과후과정 정규교사 미배치 학급에 담당인력 배치(방과후 정원 외 시간제기간제 교사) 배치
❍ 학기중 1일 3시간 또는 4시간(방학 중 8시간까지)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주무관 서현숙	전화번호	063) 540-2565 540-2578

1-9. 돌봄교실 운영 지원

□ 추진 목적

❍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돌봄교실 운영으로 유아의 정서발달 및 행복감 증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유아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학부모의 돌봄 및 양육 부담 경감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 2022 전라북도 유아교육계획(전북교육 2022-099)

□ 추진 방향

❍ 학부모의 수요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 이외의 아침 돌봄,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 저녁 돌봄, 온종일 돌봄 등 연중 운영

❍ 유아의 정서발달 및 행복감 증진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편성·운영
❍ 감염병 등 휴업 상황에 대비하여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연 1회 이상 학부모 대상 의견조사 실시 및 반영
❍ 세부사항은 유치원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

□ 추진 내용

❍ **운영 형태**

구 분	내 용	운영시간(예)
아침 돌봄교실	**아침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전**까지 운영	07:40 ~ 09:00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 이후부터 19:00까지 운영	17:00 ~ 19:00
저녁 돌봄교실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 이후부터 20:00까지 운영	17:00 ~ 20:00
온종일 돌봄교실	**아침돌봄+(교육과정, 방과후 과정)+저녁돌봄**으로 운영	07:40 ~ 22:00

*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은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임**
(개별 보호자 동의하에 1시간 이내에서 이용 시간 조정 가능, 운영 시간 일괄 조정이 아님)

❍ **지원 유치원수**
- 저 녁 돌봄교실: 사립 2개원
-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5개원(공립 3개원, 사립 2개원)

❍ **이용대상**
-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등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유아 중 희망자
- 학급 편성: 돌봄교실(1교실 당) 대상 인원은 20명 내외(최대 22명) 권장
- 참여 유아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예산지원**: 유형별 돌봄교실(온종일, 저녁, 방과후 과정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인건비, 급·간식비, 기타 운영비 등

❍ **인력배치**
- 돌봄담당인력: 돌봄전담사(단,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은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 및 교사 등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
- 돌봄전담사 인건비는 도교육청 기준 적용
-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지도 수당은 1시간(60분) 10,000원, 1일 2시간 기준

❍ **안전관리**
- 돌봄교실에 대해 전체적인 안전 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을 수립

-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확보: 현관 CCTV, 비디오폰 등
- 돌봄교실 참여 유아는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학부모 동반 귀가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성인) 사전 지정제 실시
  ※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유치원 주변 파출소나 지구대 등과 협력하여 순찰 및 유치원 경비 강화
-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아의 특이 체질이나 질병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

❍ **급식관리**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급식 제공
- 유아 영양 기준량에 충족하는 식단 관리 및 운영
- 정수기 냉·온수기 정기 검사 실시
- 보존식 관리 및 검식

❍ **운영 평가 및 환류**

- 학부모 만족도 조사, 돌봄교실 활동 계획 검토,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및 환류 실시
- 평가 결과는 공유하고 돌봄교실 운영 개선 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주무관 이소진	전화번호	063) 540-2565 540-2582

2 자율과 책임으로 행복한 교원

2-1. 유치원 교원 연수
2-2. 유치원 교원 수업동아리 운영
2-3. 컨설팅 지원
2-4. 유치원 마음모아 소통교실
2-5. 교원임용 및 인사방식 개선
2-6. 교육실습협력유치원 운영
2-7.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 여건 개선
2-8.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
2-9. 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 표창

2-1. 유치원 교원 연수

□ 추진 목적

○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 제고
○ 공감・소통・나눔을 통한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컨설팅 지속적 지원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6조,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제41조
○ 한국교원대학교유아교육원 주관 2022년 중앙연수 추진 계획
❍ 2022 전라북도유아교육계획(전북교육 2022-099)

□ 지원 대상

❍ 관내 공・사립유치원 교원

□ 추진 내용

❍ 교육지원청 주관 교원 연수: 매월 3주 화요일, 공・사립유치원 교원
- 유아・놀이중심 교육활동 지원
- 공・사립유치원 관리자 전문성 신장 연수
- 교육과정 실천 역량 강화 연수

❍ 교육부(한국교원대학교유아교육원) 주관 중앙연수
- 전임관리자(전임 원장·원감) 직무연수
- 겸임관리자(겸임 원장·원감) 직무연수
- 유아교육핵심리더 직무연수
- 유치원 수석교사 직무연수
- 유치원 부장교사 직무연수
- 학부모 협력증진 교원 직무연수
- 누리과정 실행지원 직무연수
- 유치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담당부서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담당자	교육연구사김경희	전화번호	063) 830-5411

2-2. 유치원 교원 동아리 운영

□ 추진 목적

- ❍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 실천 역량강화
- ❍ 토론과 협력, 나눔을 통해 문제 해결, 교육과정 혁신의 유아교육 문화 조성
- ❍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형성

□ 추진 방향

-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교원 수업동아리로 운영
- ❍ 유치원 수업나눔 및 연구 활동 운영
- ❍ 교육과정 수업동아리 활동 결과 나눔 및 내용 공유
-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참여 권장

□ 추진 내용

- ❍ 기간: 2022. 3. ~ 2023. 2.
- ❍ 대상: 관내 공 · 사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 ❍ 동아리 구성 요건
  - 수업 개선을 위한 동아리
  - 동아리 회원은 3~5개 유치원 교원, 7~12명으로 구성
  - 동아리 성격에 따라 통합 운영 권장
    (초등교원,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관내·외 유치원 교원 간 통합가능)
- ❍ 동아리 구성 영역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 지구사랑 환경교육
  - 인성·인권교육 영역
  - 유·초 이음
  - 유아 책 놀이
  - 비대면 교육활동
  - 자유 주제(유아·놀이중심 교육 활성화 관련)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2-3. 컨설팅 지원

□ 추진 목적

❍ 교육공동체 간 소통·협력을 통한 교원 역량강화
❍ 학습공동체 구축으로 나눔・공유・확산의 유아교육 문화 조성
❍ 교원의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자율장학 활성화
❍ 유아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체제 구축

□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17조, 유아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2022 전라북도유아교육계획(전북교육 2022-099)

□ 추진 방향

❍ 유치원 간 컨설팅,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 지원 컨설팅, 원내 자율장학 등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강화
❍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분야 컨설팅 강화
- 전라북도 교육정책 지원
- 교육과정(교육과정 편성・운영, 놀이 이해, 놀이 실행, 놀이 지원 컨설팅 등)
- 방과후 과정(방학 중 운영,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등)
- 교수・학습(놀이 기록지 작성 및 가정과의 연계, 학습공동체 운영 등)
- 생활, 안전교육(유아 자치활동, 인성・인권교육, 유치원 안전 관리 및 교육 등)
- 유치원 및 학급운영(유치원 업무최적화 및 유치원 자치, 민주적 유치원 문화 정착 등)
- 교육활동 멘토링 등(신규교사, 신규원감)
- 유치원 (기관) 평가
❍ 자율장학 활성화로 자기 수업성찰 및 동료 간 수업동행 실천
❍ 컨설팅 강화로 학습공동체 내 교육활동 나눔 및 멘토링 확산
❍ 교육(지원)청 컨설턴트 구성・운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 실시
❍ 컨설턴트 역량 강화 지원으로 컨설팅 질 제고

□ 추진 내용

❍ 대상: 공・사립유치원 교원
❍ 기간: 2022. 3. ~ 2023. 2.

❍ 컨설팅 지원 체계

도교육청 (기획.운영)	• 컨설팅 실시 기획·운영 및 평가 • 현장 요청에 의한 컨설팅지원단 조직·운영
교육지원청 (운영)	• 컨설팅 운영 계획 수립 및 안내 • 현장중심컨설팅 지원

➔

단위유치원(실행)
• 원내 자율장학 계획 수립 및 실행 • 컨설팅 요청 • 컨설팅 결과 지속 적용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컨설팅 실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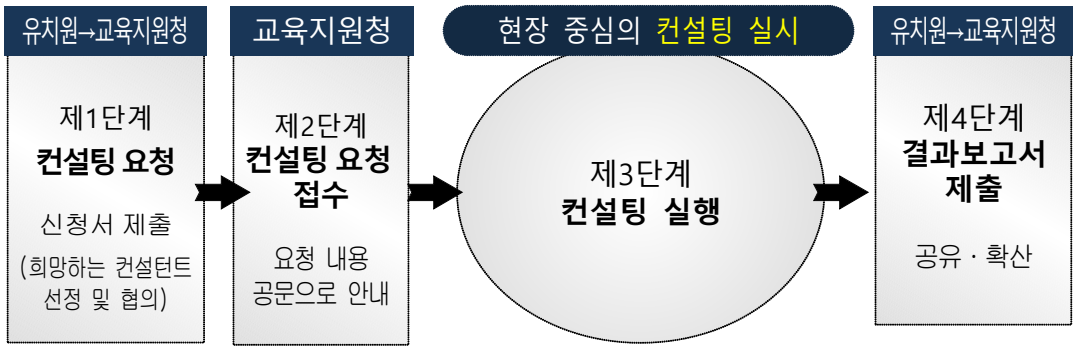

❍ 컨설팅 영역

가. 기관(유치원) 간 컨설팅	• 기관(유치원) 간 컨설팅
나.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 지원 컨설팅	• 정책지원 •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 교수·학습, 생활, 안전교육 • 유치원 및 학급 운영 • 놀이실천, 놀이이해, 놀이지원 • 교육활동 멘토링(신규교사, 신규원감) • 유치원 평가
다. 원내 자율장학	• 자기장학·동료장학·자체연수·전문적 학습공동체·동아리 등

❍ 결과 활용

- 컨설팅 사례 나눔 및 공유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2-4. 유치원 마음모아 소통교실

□ 추진 목적

❍ 유아교육 공동체 간 소통, 나눔, 소통으로 유아교육 역량 강화
❍ 권역별 교육활동 공동 운영을 통해 유아의 다양한 활동 기회 부여
❍ 유치원 교원 직무 만족도 제고

□ 추진 방침

❍ 인접한 유치원으로 권역 구성하여 교육계획 수립, 공동활동, 교육활동 성찰 등 동료성 구축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권역별 활동 실시

□ 추진 내용

❍ 기간: 2022. 3. ~2023. 2.
❍ 대상: 권역별 교육공동체(유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구성원)
❍ 운영 방법
- 인접한 유치원을 5권역으로 구성
- 교사 중심의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한 연합 활동 실시: 교원 연수 및 워크숍, 학부모 교육, 유아 활동, 교육 행사

❍ 마음모아 소통교실 구성 현황

권역	마음 나눔 협의체	비고
1권역	· 금구, 금산, 남양, 봉남, 원평, 청운, 초처, 황산	8개원
2권역	· 김제, 김제동, 김제북, 벽량, 월촌, 죽산	6개원
3권역	· 공덕, 난산, 백구, 비룡, 용동, 용지, 치문, 황강	8개원
4권역	· 광활, 만경, 백석, 성덕, 심창, 종정, 청하	7개원
5권역	· 제일유치원, 사립유치원	5개원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2-5 교원임용 및 인사방식 개선

□ 추진 목적

❍ 유치원 신규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업무관리 능력 개발 지원

□ 추진 근거

❍ 2022 유·초등 교원 인사업무계획

□ 추진 내용

❍ 공립유치원 초임교사의 1학급 병설유치원 배치 지양

❍ 공립유치원 초임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경력교사 및 원감이 있는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배치 지향

- 인사업무개선 워크숍 및 인사담당자 회의 시 우선 배치 고려 안내
- 사립유치원 교원 관리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교원 인사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지침 권장**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2-6. 교육실습협력유치원 운영

□ 추진 목적

❍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교원의 실천적 수업 연구 및 전문성 신장

❍ 예비교사 멘토링을 통한 유아교육 내실화 및 교원의 책무성 강화

□ 추진 근거

❍ 2022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업무처리요령(전북교육 2021-498)

□ 추진 내용

❍ 기간: 2022. 3. ~ 2023. 2.

❍ 대상: 단설, 전임원감이 배치된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 운영방법

가산점 부여대상	가산점 부여기간	실습지도 횟수
- 원감 - 교육과정 정규교사 - 방과후과정 정규교사	- 1회(61일 이상) 실습지도 시 2개월 인정	- 실습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1회만 인정

❍ 실습기간: 사전실습 → 본실습 → 사후실습이 1회임

- 사전실습(2주 이상)+본실습(4주 이상)+사후실습(2주 이상)=2개월(휴일포함 61일)
- 본실습은 반드시 1개월(4주<28일 이상>) 내외 현장실습 실시

※ 실습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1회 기간이 종료된 후에 다음회 시작

❍ 교육실습생 지도교사 선정 기준

-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유치원장으로부터 교육실습생을 배정 받은 교사
- 실습생 1인에 대하여 2개월(61일)동안 계속적으로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정규교사

※ 체계적 실습 지도를 위해 실습기간 중 지도교원의 복무를 강화하고 지도교사의 불가피한 장기부재(장기 연수 및 출장, 연가, 병가) 시 유치원장 판단 하에 대리 지도교사 임명

❍ 가산점 인정범위

※ 유공교원의 경우, 지도 일수에 근거한 일평정점 부여(0.00033점, 1회 지도시 0.02점 초과 불가)

※ 실습기간(61일) 분절 운영 시 가산점 미부여

예) 사전실습(2주) - 분절(1주) - 본실습(4주) - 사후실습(2주)

❍ 실습인정 학과

-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복수전공자, 유치원 교사 자격을 발급받는 학과
- 실습생 배정 시, 해당 유치원에서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2-7.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 등 지원

가.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 지원

□ 추진 목적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

❍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의 단계적 완화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18조, 제26조, 제28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 추진 내용

❍ 지원내용

구분	기본급보조			담임수당	합계
	교직수당	인건비보조	장기근속수당		
금액	25만원	33만원 (2021년 대비 3만원 인상)	3만원	13만원	74만원

❍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교원
-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정년(만 62세)을 초과하지 않은 교원
- 1일 8시간 이상 상시근무 교원
- 사학연금, 건강보험 가입 교원
- 인가학급 범위 내 편성학급의 학급담임 교원(담임수당의 경우)
  * 2학급 이하인 경우 원장, 원감의 학급담임 시 담임수당 지급 가능
- 1일 8시간 이상 상시 근무하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방과후과정을 전담하는 교원(담임수당 미지원)
  · 방과후과정 전담 교원 1명이 한 학급을 전담하거나 또는 1명이 여러 학급의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경우 모두 해당
- 원장(또는 원감)자격소지자로 임용된 원장(또는 원감)
  * 직무대리 원장(또는 원감)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사립유치원 교원의 '월 평균 소득액'이 『공무원연금 기여금 조견표』의 동일 호봉 '기준소득월액' 이상인 교원
- 타 기관 겸직하고 있는 교원
- 해당 유치원 소속이 아닌 교원
- 교육과정 또는 방과후과정을 담당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보조하는 교원
- 1주 15시간 미만 방과후 담당 교원
- 사학연금,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기관부담금 미납 유치원

❍ 지원 제외 기간

- 휴직 기간
- 복무규정 위반 해당 기간(「사립학교법」 제55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연가 범위를 벗어난, 해외 체류 시 기본급 보조 미지급
- 해외 체류 시 확인을 위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제출

-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 지급 시 임금수준 상향 시까지의 기간
- 학급담임 교원의 출산휴가 또는 1개월 이상 담임업무 미수행(병가 등) 기간 담임수당 미지급

나. 단기대체 강사비 지원

□ 추진 목적

❍ 결혼·출산 등에 대한 휴무 보장으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 진작
❍ 인건비 지원을 통한 대체강사 고용 부담 완화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2조

□ 추진 내용

❍ 지원대상
-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학급담임 및 방과후 과정 담당 교사 중
  - 원감, 원장 자격연수에 지명되어 실제 참여한 교사
    *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중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서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원감 포함
  - 1정 자격연수에 지명되어 연수에 실제 참여한 교사
    * 연수 참여 일수에 따라 지원
  - 4일 이상의 병가가 필요한 교사
    * 진단서로 증명된 경우 지원
  - 4일 이상의 공가가 필요한 교사
  - 도교육청 주관 국외 연수 대상으로 실제 참여한 교사
    *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서 학급담임을 맡고 있는 원장, 원감 포함
  - 출산 및 결혼 등의 특별휴가가 필요한 교사

    ※ 연가, 4일 미만 병가 등으로 인한 단기대체강사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단가: 1일 74천원
- 지원액 산출: 단기대체 강사 근무 산정일수(근무일수 + 주차일수)×74천원

❍ 지원내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경조사 유형 및 법정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 중 단기대체 강사비 지원

〔별표 2〕 경조사 유형 및 법정휴가일수

구 분		대 상	법정휴가일수
경조사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 자매	1
출산휴가		본 인	90

※ 입양의 경우 「입양추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서현숙	전화번호	063) 540-2578

다. 교원 육아휴직수당 지원

□ 추진 목적

❍ 육아휴직에 대한 수당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

□ 추진 근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2022.3.25. 시행)

❍ 유아교육법 제26조

□ 추진 내용

❍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육아휴직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 중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교원

❍ 지원내용(※ 세부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 당 자	주무관 서현숙	전화번호	063) 540-2578

2-8.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인건비 보조금 지원

□ 추진 목적

❍ 사립유치원 교사의 업무부담 해소
❍ 방과후 과정 강사 인건비 지원을 통한 고용 부담 완화
❍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의 내실화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27조
❍ 18대 교육감 공약사업

□ 추진 내용

❍ 지원내용
- 방과후 과정 담당 강사를 임용한 사립유치원(학년도별 채용을 기준으로 함)
  ⬩ 유치원별 2명 지원(2학급 미만 유치원 1명 지원)
  ⬩ 주 15시간 이상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방과후 과정 강사 자격 조건
- 「유아교육법」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교사 또는 「영유아보육법」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보육교사
- 「교육공무원법」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정년(만 62세)을 초과하지 않은 강사

❍ 방과후 과정 강사의 역할
- 방과후 과정 교육 및 돌봄
-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시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필히 임장
  ※ 특성화프로그램 시간에는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거나 행정 업무에 활용하지 않도록 함(임용 시간 준수)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 당 자	주무관 서현숙	전화번호	063) 540-2578

2-9. 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 표창

□ 추진 목적

❍ 유치원 교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직무만족도 향상
❍ 유아교육의 우수성 홍보 및 유아교육 기관의 위상 정립

□ 추진 근거

❍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2조, 제5조

□ 추진 내용

❍ 교육부 장관 표창

- 시기: 2022. 11.
- 대상: 공·사립유치원 유공교원 및 전문직, 업무담당 공무원 등
- 표창기준: 교육부 2022년 표창 계획에 따름

❍ 전라북도교육감 표창

- 시기: 2022. 11.
- 대상: 공·사립유치원 유공교원
- 표창기준: 전라북도교육청 2022년 표창 계획에 따름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3 소통과 공감의 따뜻한 교육행정

3-1. 유아학비 지원
3-2. 다문화 유아 및 가정에 대한 지원
3-3.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3-4.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
3-5.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
3-6. 유치원 신·증설 적정화
3-7.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정착
3-8. 4세대 지능형 나이스(유치원) 기반 구축
3-9.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 원
3-10.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운영
3-11.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3-1. 유아학비 지원

□ 추진 목적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절감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추진 방향

❍ 안정적인 유아학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해소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 지원

□ 추진 내용

❍ 유아학비(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교육과정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9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취학 대상 유아가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방과후 과정	- 공·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에 참여(교육과정 포함 1일 7~ 8시간 이상)하는 유아

*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연령 및 지원액 (단위: 원)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만 5세	2016.1.1. ~ 2016.12.31.	100,000	280,000
	만 4세	2017.1.1. ~ 2017.12.31.		
	만 3세	2018.1.1.~ 2019.2.28.		
방과후과정비	만 3~5세	2016.1.1.~ 2019.2.28.	50,000	70,000

※ 교육과정비: 2022.3.1.자 20,000원 인상

❍ 유아학비 신청 절차 및 기타사항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 유아학비 지원 연령 및 단가, 신청 절차, **무상교육 기간(3년) 종료 시 유아학비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사전 안내로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법정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학부모부담금 1인당 150,000원 실비 지원
- 보호자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e-유치원 시스템에 반영되면 자격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지원 연령 및 지원액

구 분	연 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지원금	만 3~5세 (저소득층)	2016.1.1.~2019.2.28.	.	150,000 (실비 상한액)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 당 자	주무관 양재은	전화번호	063) 540-2574

3-2. 다문화가정 유아 등에 대한 지원

□ 추진 목적

❍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 기회 확대

❍ 외국국적 유아의 누리과정 학비 지원

❍ 다문화정책유치원, 다꿈사랑방유치원 지정 운영

❍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 추진 근거

❍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제4조의2, 제9조

□ 추진 내용

❍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맞춤형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및 인지능력 발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통합교육 실시
- 다름에 대한 존중, 문화다양성 교육, 언어교육, 학부모 교육 및 교원교육 지원

❍ 외국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
- 외국국적 유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 다문화가정 유아와 비다문화가정 유아가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 지원 사업

구 분	지 원 대 상	비고
다꿈유치원 지원 신청	❍ 다문화정책유치원: 1개원 ❍ 다꿈사랑방유치원: 5개원 ❍ 다꿈부모나라 언어교실: 3개원	·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선정 후 지원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 당 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3-3.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 추진 목적

❍ 공·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학습권 보장

□ 추진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7조(통학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 2022 전라북도유아교육계획(전북교육 2022-099)

□ 추진 내용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	⇒	선정.배치 결과 통지	⇒	교육비 등 지원신청	⇒	교육비 등 지원	⇒	정산서 제출	⇒	교육비 지원 등 실적 제출
보호자→유치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유치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유치원		유치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유치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비 지원

- 지원대상: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u>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u>

- 지원내용

· 사립: 1인 월 381천원 이내 실비 지원(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한 교육활동 경비)

❍ 특수교육대상 유아 치료지원비 전자카드(꿈 활짝카드)지원

- 지원대상: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지원내용

·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치료지원 평가통지서 영역에 맞는 치료영역 신청 가능하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영역과 동일영역 지원 불가함

※ 치료 신청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치료, 보행훈련, 기타 관련 서비스(미술·음악, 심리운동, 감각통합)

❍ 특수교육대상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중

·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실제 원거리를 통학하거나, 중증장애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유아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유아의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 지원내용

· 대중교통비, 통학버스비 기준으로 1일 2회 지원

※ 통학버스 이용의 경우 중복신청 불가함

❍ 특수교육대상 유아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 유아 중 방과후과정 신청자 월 10만원 실비 이내 지원

- 유아학비 신청자는 중복지원 불가

유의 및 주의 사항

① 취학 유예한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교육비, 치료지원, 통학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초등학교 취학유예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취학 독려
② 누리과정 지원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람
③ 공·사립 유치원이 아닌 기관(어린이집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교사 노나미	전화번호	063) 540-2591

3-4.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

□ 추진 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시설 이용
❍ 유치원 시설의 접근성 확보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 추진 내용

❍ 편의시설 설치대상 교육기관 단계적 범위

적용시기	적 용 대 상
2009. 4. 11.	- 국·공·사립 특수학교 -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
2011. 4. 11.	- 국·공립 유치원 -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2013. 4. 11.	- 사립 유치원

※ 편의시설은 관련 법령에 의거 특수학급 설치여부 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이 설치 대상임

❍ 유치원 편의시설 설치항목

구 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화장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8개항목

※우선 설치 항목(공립유치원 자체 설치): 3개 항목
①장애인전용 주차구역(주차대수 10대 미만 비대상) ②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③소변기 핸드레일(유아용 소변기만 설치된 경우는 비대상)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담당자	특수교사 장기훈 주무관 안진혁	전화번호	063) 540-2595 540-2534

3-5.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

□ 추진 목적

❍ 원비를 동결한 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을 통한 안정화 실현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추진 방향

❍ 유치원 원비 안정화에 기여한 사립유치원에 운영 지원
❍ 전년대비 원비 인하, 동결 또는 원비 인상 상한율(1.0%) 준수 유치원 동결지원금 지원
❍ 소규모·소액 유치원 지원을 위해 유치원 원비 및 유아 수에 따른 동결지원금 차등 지원

□ 추진 내용

❍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상한제 지속 추진
-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함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 2022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21.10.5.)

- **유치원 원비 인상 상한율: 1.0%**
  (재원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의 1.0% 이내로 원비 인상 가능)

❍ 유치원 원비 동결 및 지원 기준
- 입학금, 교육과정비 간의 비용 이동은 가능하고 **전년대비 원비 총액의 1.0% 이내 인상까지 동결로 인정하여 동결지원금 지원**
  단, 유아 수가 학급편성 최소 인원(도시지역 기준 5명) 이하인 유치원은 지원 제외
  ※ 기준: 2021년 유치원비(2022년 유치원비를 인하하여 위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포함)

❍ 동결지원금 지원 방안
- **소액·소규모 유치원 지원을 위한 차등 지원**: 유치원 원비 및 유아 수 기준에 따라 원당, 학급당 차등 지원
- **소규모 유치원 특별 지원**: 유아 수 50명 이하 유치원 원당 100만원 추가 지원

❍ 사립유치원 재정 차등 지원을 통한 유치원비 안정화
- 학부모부담 원비 수준을 고려하여 고액 원비 유치원은 유치원비 동결 시에도 동결지원금 지원 배제
  * 고액 원비 유치원: 전북 학부모부담 평균 원비의 2배 초과 유치원

❍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단 구성 · 운영
- 단장: 학교교육과장
- 단원: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3명
  ※ 교육지원청 점검 시 합동 점검 실시

❍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단 구성 · 운영
- (구성 및 인원) 교육지원청별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 수립·시행
- (점검 기간) **연중 상시 점검**하며, 새 학기 시작 전 유치원비 과다 책정 사전 차단을 위하여 **1~2월중 집중 지도·점검** 추진
- (점검 사항) 원비 책정 근거, 인상 상한율 준수 여부 등 유치원비 안정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주요 점검 항목]

▪ 정보공시 등 유치원비 통계 관리의 적정성 및 항목 누락 여부(최근 3년간 유치원비 현황)
▪ 유치원비 인상 시 인상 사유 및 책정 근거
▪ 원비 구성 항목의 적정성(특성화 활동비, 기타 선택경비 등 반드시 포함)
※ "유치원 원비"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총칭(유아교육법 제25조)
▪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 여부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 관련)
※ 동조 제4항에 따라 시 · 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비 인상률 상한제 예외를 적용하려는 경우, 이과 관련한 적정 여부 포함
▪ 원비 결정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실시 여부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동조 제1항 제4호)"에 대해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함

▪ 유치원 규칙 중 유치원비 관련 기재 내용의 적정성
※ [참고] 시행령 제10조(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유치원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수업료 · 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 유치원 세입 · 세출 예산서 상 예산 과목 구성 및 적정 편성 여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및 별표5 · 6 적용 여부 포함)

❍ 위반사실 적발 시 조치
-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행정상 착오 등은 현장 조치하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조치
- 시정 · 변경 명령 불이행 시, 기 지급한 지원금 반환 및 재정 차등 지원 등 조치
- 각종 지원금 회수 및 각종 지원 사업 대상에서 후순위
- 행정처리 절차에 의거 유아모집 정지, 학급 감축 등
※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28조 및 제30조

[주요 위반 사례]

▪ 3월초 유치원비 안정화 정책에 협조하고, 추후에 인상하는 경우
▪ 유치원비 인상 상한율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 유치원비 징수내역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유치원비 징수내역 보고 자료와 학부모 공지 내용이 다른 경우
▪ 정보공시시스템 및 유치원 홈페이지에 유치원비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보고한 유치원비 이외의 별도 항목을 만들어 학부모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서현숙	전화번호	063) 540-2578

3-6. 유치원 신 · 증설 적정화

□ 추진 목적

❍ 유치원 유아의 적정배치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동법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 2022 전라북도유아교육계획(전북교육 2022-099)

□ 추진 방향

❍ 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 유치원 학급당 최대 원아 수 적정화 유지

□ 추진 내용

❍ 2022.3.1. 공립유치원 신 · 증설 추진 현황

구분	유형	지역	유치원명	2021.학급 수			신·증설규모			2022.학급 수		
				일반	특수	계	일반	특수	계	일반	특수	계
신설	단설	군산	군산가람유치원	0	0	0	12	3	15	12	3	15
	병설	군산	군산금빛초병설유치원	0	0	0	3	0	3	3	0	3
	소 계			0	0	0	15	3	18	15	3	18
증설	단설	전주	완주봉서유치원	6	0	6	0	1	1	6	1	7
	단설	전주	임실둥지유치원	5	0	5	1	0	1	6	0	6
	소 계			11	0	11	1	1	2	12	1	13
합 계				11	0	11	16	4	20	27	4	31

❍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적정화로 교실 수업 개선

(단위: 명)

구 분	정원 기준			최소인원 기준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지역		최소 유아 수
		정원	허용			
만3세반	14	14	16(+2)	시(동)		5
만4세반	18	18	20(+2)	농어촌	읍	4
만5세반	22	22	25(+2)		면	4
만3~4세반	16	16	18		벽지	4
만4~5세반	18	18	24		도서지역	3
만3~5세반	16	16	18			

※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학급편성기준에 따르되 2017년에 마련된 최대 유아 수 기준을 허용하고, 연령별 최대 2명, 총 6명까지 기준 초과 학급 편성 가능

※ 면·벽지·도서 지역은 기준 인원 미만의 경우도 주변 유아교육 여건(통학 수단의 어려움, 특수유아가 재학 중일 경우, 인접한 행정구역 단위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 등)을 검토하여 학급 편성(존치) 여부 결정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주무관 김영희	전화번호	063) 540-2542

3-7.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정착

□ 추진 목적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 보장
❍ 유치원정보공시 자료 검증체계 구축을 통한 공시자료 신뢰도 향상
❍ 유치원 운영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추진 근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 추진 방향

❍ 유치원정보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공시자료의 신뢰도 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추진 내용

❍ 공시 후 유치원정보공시 점검

시기	주관기관	대상기관	내용
상・하반기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반복적 오류가 많은 유치원 - 시정권고・명령을 받은 유치원	정보공시항목 및 오류사례 점검

※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유치원 현장 점검 시행 여부 및 추진 일정 조정

❍ 기관별 역할 정립을 통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구분	지원 관리 내용
유치원	○ 유치원정보공시 항목별 작성자/확인자 지정·운영 ○ 공시자료 입력 및 제출, 공시 ○ 공시입력 근거자료 관리
교육지원청	○ 관할 유치원 공시업무 지원 ○ 유치원 공시자료 수합/관리 및 검증 ○ 공시정보의 질 관리 및 현장점검
도교육청	○ 유치원정보공시 계획 수립 및 통보 ○ 유치원 공시자료 수합/관리 및 검증 ○ 공시정보의 질 관리 및 현장 점검 ○ 교육지원청 공시업무 지원

※ 행정용 메신저, E-mail 등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공시 주기별・단계별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공시업무 추진 효율성 강화

❍ 공시 전 단계별 검증 체계화를 통한 공시정보 신뢰도 제고

해당기관	단계별 검증 내용
유치원	○ 1차: 시스템 입력 전에 공시 입력근거자료를 작성하여 대조·확인 ○ 2차: 원자료 취합 후 나이스, e-유치원시스템 등 자료와 확인 검증 ○ 3차: 확인자가 검증 점검표(근거자료)를 이용 검증 ※ 정보 수정 및 재입력 시 1·2·3차 순 재검증
교육지원청	○ 1차: 유치원에서 제출된 자료를 오류 검사에 의해 검증 ○ 2차: 유치원별 입력 자료와 '입력 근거자료'를 대조·확인 검증 ※ 오류 정보 입력 유치원에 통보하여, 시스템 입력 자료 수정 조치 ○ 3차: 필요시 유치원 현장 방문 실태조사 검증
도교육청	○ 1차: 교육지원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오류 검사에 의해 검증 ○ 2차: 유치원별 입력 자료와 '입력 근거자료'를 대조·확인 검증 ○ 3차: 각 세부항목 담당자(부서) 검증의뢰(필요 시) ※ 오류 정보 입력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 시스템 입력 자료 수정 조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주무관 김선화	전화번호	063) 540-2512

3-8. 4세대 지능형 나이스(유치원) 기반 구축

□ 추진 목적

❍ 유아교육 전 주기 전자적 업무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 4세대 나이스 기반의 유아교육 서비스 구축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강화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4조(생활기록부)

❍ 유아교육 전주기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유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 (유아교육정책과-2539, 2020.5.1.)

❍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정(유아교육정책과-5525, 2021.10.19.)

□ 추진 내용

❍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통합 및 연계를 통한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

- 시스템 별로 분산 관리되는 데이터 통합 및 통합 인증 체계 구축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내·외부 연계 서비스 도입

❍ 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 업무 정보화
-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사행정의 정보화 및 회계시스템 연계
- 자동 출결·학비 연계를 통한 교원 업무 경감
❍ 나이스 통합 활용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강화
- 유치원 생활 정보 전송을 통한 학부모 안심 서비스 지원
- 온라인 민원 발급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장학사 나경화 주무관 서현숙	전화번호	063) 540-2565 540-2578

3-9.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정적 정착

□ 추진 목적

❍ 유치원 전체 회계 업무에 대한 디지털 재정 운영을 통한 회계 업무의 투명성 확보
❍ 법과 회계규칙에 기반을 둔 K-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강화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 추진 방향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실시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추진 내용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실시
- 기간: 2022. 1 ~ 12
- 대상: 사립유치원
- 장소: 교육지원청,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
- 내용: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예산·수입·지출 시스템 기능 교육, 회계교육 등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상시지원체계 구축
- 도교육청 담당인력 및 희망 사립유치원과 지방공무원 멘토 매칭 1:1 수시 컨설팅 실시

- 상설교육장 수시교육 및 시스템 작업 실시
- 자체 콜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불편 사항 처리
- 원격지원을 통한 맞춤형 전문상담 및 실시간 지원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주무관 김영희	전화번호	063) 540-2542

3-10.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운영

□ 추진 목적

❍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 모집·선발을 통해 유치원의 공정성 확보
❍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한 학부모 불편 해소 및 유치원 업무경감에 기여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11조, 제19조의2
❍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 추진 내용

❍ 모집 대상: 공·사립유치원
❍ 모집 시기: 2022. 11.
❍ 모집 방법: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활용(현장접수 가능)
❍ 지원 횟수: 신입생 3회 지원 가능(재원생은 타 유치원에 2회 지원 가능)

구분			2022학년도 유아모집
우선 모집	추첨 방식		희망순 추첨방식
	선발 순위	1순위	특수교육대상자 우선 의무배정, 법정저소득층 가정 자녀 (모집인원 100% 반영)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자녀(모집인원 3% 이상 반영)
		3순위	북한이탈주민 대상 가정 자녀(모집인원 3% 이상 반영)
		4순위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자녀(모집인원 50% 이상 반영) - 다문화 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2명 이상) 자녀, 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 가정 자녀, 장애부모 가정 자녀, 건강 취약 유아, 쌍생아
		5순위	유치원장 자율 결정(모집인원 40% 이내 반영)
일반 모집	추첨 방식		희망순(중복선발제한) 추첨방식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 당 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3-11.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 추진 목적

❍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 통로로 유치원 운영의 민주적 투명성 제고

❍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 2019 유치원운영위원회 길잡이(학교교육과-2368(2019.2.19.))

□ 추진 내용

❍ 유치원별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 설치 범위: 국·공립유치원과 유아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 위원 임기: 1년 또는 2년 중에서 해당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위원 구성: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5~11명 이내)

  ※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위원회 성격: 국·공립유치원(심의기구) / 사립유치원(자문기구)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 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주무관 박나라	전화번호	063) 540-2544

4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4-1. 유치원(기관) 평가 운영
4-2. 유치원 보건환경 개선
4-3. 유치원 급식안전 개선
4-4.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
4-5. 행복안전유치원 운영
4-6.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및 교육
4-7. 유아 성교육 내실화 교육

4-1. 유치원(기관)평가 운영

□ 추진 목적

❍ 현장 중심 유치원 평가로 유아교육 질 제고 및 교육서비스 개선

❍ 학부모의 알 권리 및 유치원 선택권 보장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평가의 대상),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2조(평가의 절차)

□ 추진 방향

❍ 교육공동체의 성찰중심 자체평가로 유치원 환경 개선 및 교원 역량강화 지원

❍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

❍ 자체평가 실시로 유치원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 컨설팅 장학과 연계하여 영역별 내실있는 평가 실시

□ 추진 내용

❍ 평가기간: 2022. 3. ~ 2023. 2.

❍ 평가대상: 공·사립유치원 전체

❍ 평가방법: 자체평가

❍ 평가영역: 교육과정 등,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 평가절차: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자체평가→평가 결과 공개(정보공시시스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자체평가		평가 결과 도출		평가 결과 공개
유치원 교육공동체 중심 구성 유치원 자체평가 계획 수립	⇨	평가영역 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 실시 영역별 우수한 점과 노력할 점 추출	⇨	평가 결과서 작성	⇨	유치원 홈페이지 공개 (다음해 2월) 정보공시탑재 (다음 해 4월)

※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평가위원회와 연계 가능

- 겸임원장(감), 보건, 안전, 예산 등 영역별 담당자 포함

❍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

- 자체평가 결과 및 영역별 특장점 공개
-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 공개(유치원 홈페이지, 정보공시)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4-2. 유치원 보건환경 개선

□ 추진 목적

❍ 유치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및 원사(園舍) 내 공기 질 개선

□ 추진 근거

❍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호,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교육부 지침「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 추진 방향

❍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한 학생 건강 보호

❍ 원사(園舍) 내 공기 질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 추진 내용

❍ 원사(園舍) 먹는 물 관리

- 먹는 물(정수기) 수질검사 실시: 연 4회(분기별)
- 저수조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 급수관수 수질검사: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 1회 이상
- 저수조(물탱크) 청소: 연 2회(반기별 1회) 실시

❍ 원사(園舍) 내 공기 질 관리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12종에 대하여 공기 질 측정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 당 자	주무관 주연희	전화번호	063) 540-2586

4-3. 유치원 급식안전 개선

□ 추진 목적

❍ 유치원 급식시설·설비 등의 위생관리 기준과 균형 잡힌 영양관리 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환경 조성

❍ 건강 취약 계층인 유아에 대한 식중독 등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

□ 추진 근거

❍ 학교급식법 개정(시행 2021.1.30.)
- 제4조(학교급식대상), 제6조(급식시설·설비),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 식품위생법 제2초,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추진 방향

❍ 유치원 급식에「학교급식법」을 적용하여 유치원 급식운영의 내실화 도모

※ 다만, 유아 수 100명 미만 유치원(10월 정보공시 기준)은 「유아교육법」적용 및 해당 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 관리 받아야 함

❍ 유치원의 급식 위생 · 안전 및 영양 관리 강화

□ 추진 내용

❍ **유치원급식 운영의 내실화**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급식 제공
-「학교급식법」대상 유치원 : 영양(교)사 배치로 영양 · 위생 관리 강화, 급식 운영평가 연 1회 실시

❍ **위생 · 안전 관리 강화**
-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검진 실시
- 위생·안전 현장확인 연 2회
-「학교급식법」대상 유치원 조리용구 미생물 검사 연 1회 실시
- 급식관계자 위생·안전 교육 실시

❍ **보존식 관리 및 검식**
- 당일 제공하는 모든 음식(간식 포함)을 배식 직전에 보존식 용기에 1인 분량(150g 이상 권장)씩 독립적으로 담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보관
- 조리 완료 즉시, 배식하기 전에 조리책임자 및 급식 관리자가 검식 후 결과를 “검식일지”에 기록, 비치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준수
- 식재료 구매시 원산지, 등급 등 품질기준 명시 및 검수서 작성·보관
-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의 원산지를 식사 장소, 누리집 등에 게시·공개

❍ **유아 성장 발달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준수**
- 유아 영양관리기준 준수(「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3)
- 제공 식단의 영양량 및 알러지 유발식품 정보를 식사장소 및 누리집 등에 게시·공개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 당 자	주무관 이소진	전화번호	063) 540-2582

4-4.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

□ 추진 목적

❍ 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 유아 안전사고 발생요인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

□ 추진 근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추진 내용

❍ 유아 실종 예방 관련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 유아 건강검진 정보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연계 안내

❍ 유아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안내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이상진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8 540-2565

4-5. 행복안전유치원 운영

□ 추진 목적

❍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교직원 안전의식 고취 및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 추진 근거

❍ 국정과제 49-1.「유아교육 국가 책임 확대」

❍ 2022년 유아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기본계획(유아교육정책과-4854, 2021.9.10.)

□ 추진 배경

❍ 유치원 이용시간 증가에 따른 안전하고 위생적인 교육환경 조성 필요

□ 추진 내용

❍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역량 연수 실시
- 안전환경 조성 및 행복안전유치원의 이해 도모를 위한 연수

❍ 수요조사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한 공사립 유치원 지원
- 자체 평가서 및 사업 계획서 검토
- 필요시 현장 실사

❍ 안전·교육·예산 분야 종합컨설팅 2회 이상 실시
- 유치원 실내외 환경, 위생안전
- 실내외 시설물 안전
- 등·하원 안전 및 급·간식 영양 등

❍ 유아, 학부모 및 교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신뢰도 제고

❍ 운영 결과 나눔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개선 사례집 제작 및 누리집 탑재를 통한 확산
- 운영 계획서 제출: 3월중(유치원)
- 대상 유치원 선정 및 추천: 3월중(도교육청)
- 예산 지원 및 컨설팅: 4월중(도교육청)
- 행복안전유치원 조성: 4월~11월(유치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 수요조사 및 예산 확보 • 「행복안전유치원」 운영 계획 수립 • 예산 재배정 • 사업성과 분석 및 운영사례 일반화	➔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예산 교부 •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컨설팅 운영: 2회 이상 •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운영결과 사례 나눔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 당 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4-6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및 교육

□ 추진 목적

❍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 및 의심 시 신속한 신고로 아동학대 예방

❍ 위기가구 긴급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및 보호

❍ 조기발견을 위한 유치원 결석 아동 및 위기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

□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및 제26조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

□ 추진 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
- 유치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112)에 신고 등 필요 조치 이행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무단결석 아동 및 퇴학 아동 관리 강화
  · 2일 이상 무단결석 아동 발생 시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안전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 명확한 사유 없이 자퇴 신청 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 아동의 출결사항을 매일 확인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해당
- 유치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즉시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 교육 미 이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 필수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세부 사항 및 결과 제출은 교육혁신과 공문 참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유치원장은 신고의무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휴직자 제외)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4-7. 유아 성교육 내실화 교육

□ 추진 목적

❍ 유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으로 성 인권 침해 사전예방

❍ 유아 성 행동(문제)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 및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 성 행동(문제) 문제 예방

❍ 유치원 교원의 유아 성 행동 관련 이해 제고 및 업무 대응력 제고

□ 추진 근거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4927(2020.8.27.) 유치원 성교육 내실화 추진 안내

❍ 교육부(2020.8.) 유치원 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 대응 지침

□ 추진 내용

❍ **유치원별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유치원 성교육 운영**

-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 · 유치원별 성교육 업무 담당 교원(유치원, 학급)을 지정하여 성 행동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 지원 및 사안 발생 시 신속 처리
  - · 유치원 성교육 담당교원 연수 이수 및 전달 연수 실시(최소 3시간 이상)
- **성교육 계획 수립**
  - · 유아 성 행동 판단 기준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 성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활용한 단위유치원별 성교육 계획 수립・정비
  - ·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누리과정 내용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 대상 **성교육 내실 운영**(8시간 이상)

❍ **유아 성 행동 수준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체계적인 지원 강화**

- 교원 등 연수 지원, 성 행동 조치 사례별 종합적 대응 방안 지원을 위한 유아 성 행동문제 사례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유아 연령별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행동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통해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사안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방안 지원

▸ **(구성)** 교육청(총괄), 유아교육전문가, 해바라기센터, 의사, 경찰,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

▸ **(역할)** 행동수준별 유아 성 행동 중 자문, 초기 조사에 따른 사례 평가, 부모간 중재안 및 상담·치료 연계, 교육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절차)** 사건발생 접수➔초기조사(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과 합동)➔사례위원회➔사후 관리

❍ 유아 성 행동 수준에 따른 관리·대응 체계

행동 수준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유치원 대응	▪ 유아 성교육담당자 지정 ▪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 지도, 관찰 ▪ 일상적 행동에 대한 부모 소통·교육 ▪ (필요시) 교육청 자문 요청	▪ 행동중지, 상황 파악 ▪ 부모 면담 ▪ (필요시) 학부모, 유아 대상 관련 교육 ▪ (필요시) 교육청 자문·지원 요청	▪ 즉시 중지 분리 조치 모든 유아 보호 ▪ 상황 파악 ▪ 보호자 연락, 피해아동 치료 연계 ▪ 교육청 즉시 보고 및 사례관리 지원 요청
교육(지원)청 대응	▪ (요청시) 유치원 방문 컨설팅 ▪ (필요시) 유치원 자문·대응 지원 ▪ 우려 또는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시 상위 수준에 맞게 대응	▪ 유치원 자문 ▪ 사례별 대응 지원 ▪ 자문·지원 과정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시 사례위원회 회의 요청(위험한 수준에 준하여 대응)	▪ 관할청 보고 ※ 교육지원청 →교육청→교육부 ▪ 초기조사 지원 ▪ **사례위원회** 총괄 지원 ▪ 중재안 및 치료·상담 등 사후관리 연계 방안 마련 지원 ▪ 관련 내용 모니터링 지속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5 협력과 지원으로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5-1.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5-2. 유치원 자원봉사자(하모니) 지원
5-3.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지원
- ◩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활동 지원
- ◩ 교원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 지원
- ◩ 행복을 더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5-1.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 추진 목적

❍ 협력 네트워크 운영으로 유아발달 및 복지, 교사 역량강화, 놀이중심 유치원 운영 등 지원
❍ 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대학, 지역사회가 유기적 소통으로 공동체가 함께 유아발달 지원
❍ 유치원 교원의 담당업무별, 연령별 네트워크 형성으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활성화

□ 추진 근거

❍ 2022 전라북도 유아교육계획(전북교육 2022-099)

□ 추진 내용

❍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약을 통한 유아의 안전한 돌봄 지원
❍ 단설유치원 간 공동 수업연구회
❍ 소규모 유치원 간 교육과정 및 놀이사례 공유
❍ 교무·연구, 방과후 과정 담당 정교사, 연령별 담임교사, 유·초등연계, 공·사립유치원 간 네트워트 조직으로 유아교육의 소통채널 마련 권장
❍ 예비교사의 교사교육을 위한 유치원-대학 간 교육실습협력유치원 운영
❍ 지역사회의 풍부한 교육자원(인적, 환경적, 문화적 자원) 활용 방안 모색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5-2. 유치원 자원봉사자 운영

□ 추진 목적

❍ 유치원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참여 활동 기회 제공
❍ 유아와 자원봉사자 세대 간 교류를 통한 유아의 안정된 정서·발달 지원

□ 추진 근거

❍ 2022 전라북도 유아교육계획(전북교육 2022-099)

□ **추진 내용**

❍ 자원봉사자 대상: 만 60세 이상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봉사 정신이 강한 여성

❍ 운영기관: 공・사립유치원,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포함)

❍ 위촉기간: 2022. 3.~2023. 2.(1년 이내로 설정)

❍ 봉사시간: 주 14시간 이상 ~ 주 15시간 미만

❍ 실비(교통비 등): 1일 22,000원

- 소요 예산은 운영 유치원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
- 임금의 개념이 아닌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에 대한 실비(교통비)로 **초과 지급 불가**

※ 유치원과 자원봉사자가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내용 결정

❍ 김제시청 연계 시니어클럽 연계 유치원 보조 인력 지원

- 「사회서비스형 하모니 사업」 추진
  - ・기간: 2022. 01. 01.~10. 31.(10개월)
  - ・근무시간: 주 5회, 1일 3시간, 월 60시간 이상
  - ・인원: 40명
  - ・내용: 교육활동 보조(책 읽어주기, 학습교구 준비 및 정리, 학습지도 보조) 및 기본생활습관 지도 보조(급・간식 준비 및 주방 정리 보조)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장학사 나경화	전화번호	063) 540-2565

5-3.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지원

◩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활동 지원 ◪

가. 놀이꽃을 피우는 실내놀이터 운영

□ **추진 목적**

❍ 다양한 놀이 체험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유아의 조화로운 발달 지원

❍ 즐겁고 행복한 오감만족 놀이 체험을 통한 유아의 바른 인성 함양 지원

□ **추진 근거**

❍ 2022년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계획

□ **추진 방향**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실내꿈터 운영

❍ 유아들의 오감만족 놀이 체험을 통해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내꿈터 운영

□ **추진 내용**

❍ 활동중심 실내체험 프로그램 운영

- J코스, B코스: 1일 최대 체험인원 175명

❍ 온몸으로 체험하는 놀이형 프로그램 확대·운영

- 체험담당자 월별 안전 매뉴얼 안내를 통해 실내체험 활동 질 관리
- 각 꿈터별 유아인솔 담임교사와의 협력 지도체제 구축

❍ 놀이중심 체험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 B코스 나래꿈터 '무지개그림자방' 을 현대화된 인터렉티브 디지털 체험『리듬체험방』으로 리모델링
- B코스 튼튼꿈터 '치과병원' 의 유아체험용 태블릿 시설 설치
- B코스 슬기꿈터 전자액자모니터 교체
- 체험동 조감도, 360° VR 동영상 자료 홍보로 실내꿈터에 대한 이해 확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월별 안전매뉴얼 수립·운영

- 방역 지침에 따른 1일 체험 참여 유아 수 조정
- 입소 유아 및 인솔자 출발 전 발열체크 필수, 마스크 착용, 손씻기, 손소독 수시 실시
- 식생활관 비말방지용 가림막 설치, 이용 자리 배치도에 따라 거리두기

❍ 원격 놀이활동 지원방 [집콕! 놀이콕!], 환경교육 콘텐츠 [지구야! 함께 가자]를 보완·확장하여 개발 예정

- 온라인을 통한 놀이활동자료 탑재
- 지구사랑 통합 콘텐츠로 웹(Wep)과 앱(App)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연계·제작하여 보급
- 가정에는 돌봄 지원, 교원에게는 원격수업 활용 지원

담당부서	전북유아교육진흥원	담당자	교육연구사 강옥선	전화번호	063) 830-5412

나. 자연과 함께하는 실외체험 모험놀이터 운영

□ **추진 목적**

❍ 맘껏 뛰어노는 모험놀이로 유아의 자기주도적 태도 형성

❍ 자연친화적 활동을 통한 유아의 호기심과 탐구심 증진

□ **추진 근거**

❍ 2022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계획

□ **추진 방향**

❍ 유아가 놀이의 주인공이 되는 실외체험 활동 운영

❍ 날씨변화에 대처하는 실내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 내용**

❍ 유아가 놀이의 주인공이 되는 모험놀이터 운영

- 산책마당: 자람숲, 구불구불 둘레길, 생태연못
- 하늘마당: 공놀이, 짚라인, 그물놀이, 정글그물놀이
- 흙마당: 작두펌프, 실개천, 모래놀이, 조합놀이, 낚시놀이, 착시놀이, 흔들말, 그네, 뱅뱅이, 시소
- 숲마당: 밧줄놀이, 자연물놀이
- 모험마당: 모험나무, 언덕, 땅속놀이, 새총놀이, 모험놀이, 그물해먹
- 계절마당: 봄·가을/소꿉놀이, 여름/물놀이, 겨울/잔디썰매

❍ 자연친화적 놀이중심 실외체험프로그램 운영: 1일 최대 200명

❍ 날씨변화에 대처하는 실내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과학마루: 춤추는 로봇, 라이트 테이블, 라이트드로잉
- 창의놀이: 4D프레임
- 블록놀이: 큐즐과 빅블럭, 소프트블럭, 팔각창의블럭, 빅블럭, 스퀴즈블럭
- 어울놀이: 목자축구, 유아컬링, 무지개 팽이
- 공감놀이: 목재 슬라이스, 자연목 원통, 나무 이야기
- 놀이마루: 벽클라이밍, 농구, 스피드터치, 종이젠가, 투비터널

담당부서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담 당 자	교육연구사 유경미	전화번호	063) 548-1188

◩ 교원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 지원 ◪

가. 교원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 연수

□ **추진 목적**

❍ 교원의 맞춤형 연수기회 확대

❍ 교수·학습 개선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 추진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662호)
❍ 2022년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주요 업무 계획

□ 추진 방향

❍ 맞춤형 집합 및 원격연수 운영
❍ 연수생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연수일시 및 연수 장소 고려하여 운영
❍ 연수만족도 조사를 통한 연수개선 창구 마련
❍ 타 연수기관과 연계하여 우수 프로그램 활용

□ 추진 내용

구분	순	과 정 명	기간	시간	횟수	일수	인원	비고
자격연수	1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1기	12.27.~1.14.	98	1	15	60	
	2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2기	7.25.~8.12.	98	1	15	60	
		소계			**2**		**120**	
직무연수	1	놀이로 행복한 유치원 만들기 1기	1.19.~1.21.	18	1	3	30	
	2	공립유치원 신규 및 복직교사 직무연수	2.7.~2.11.	30	1	5	60	
	3	사립유치원 원장 직무연수	4.22.	6	1	1	45	
	4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연수	5.~6.	40	20	20	300 (15명 20회)	
	5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시도별 정책 연수	5.26.~5.22.	12	1	2	12	
	6	방과후 과정 교사 맞춤형 직무연수	6.22./6.24.	4	2	2	200	
	7	놀이로 행복한 유치원 만들기 2기	8.17.~8.19.	18	1	3	30	
	8	공립유치원감 직무연수	10.6.~10.7.	12	1	2	35	
	9	공립유치원 신규 겸임원장 직무연수	10.12.~10.14.	18	1	3	40	
	10	공립유치원 신규 겸임원감 직무연수	11.2.~11.4.	18	1	3	40	
	11	유아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개발자료 활용연수	12.16.	3	1	1	60	
	12	놀이교육연수	7.16./7.23.	4	2	2	60	석교
		소계			**33**		**912**	
중앙연수	1	유치원 전임관리자 직무연수 (전임 원장(감))	상, 하반기	15	4		6	
	2	유치원 겸임관리자 직무연수 (겸임 원장(감))	상, 하반기	15	4		4	
	3	유아교육핵심리더 직무연수(유치원교원 및 유아교육전문직원)	하반기	15	1		1	
	4	유아교육핵심리더 직무연수(시도 유치원 연수 담당자)	하반기	15	1		1	
	5	유치원 수석교사 직무연수	상반기	20	1		2	
	6	유치원 부장교사 직무연수	상반기	15	1		10	
	7	학부모 협력증진 교원 직무연수	상반기	15	1		10	
	8	누리과정 실행지원 직무연수	상, 하반기	15	2		10	
	9	유치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상, 하반기	15	2		4	
		소계			**17**		**48**	
		합계			**52**		**1,080**	

※ 위 연수계획은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경 운영될 수 있음.

나. 맞춤형 원격연수

□ 추진 목적

❍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맞춤형 원격연수 운영으로 교원 역량강화 지원
❍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원격연수 운영으로 교원 전문성 신장

□ 추진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662호)
❍ 2022년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주요 업무 계획

□ 추진 방향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연중 활용
❍ 위탁 원격연수기관 우수 프로그램 활용
❍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수강 편의 제공

□ 추진 내용

구분	순	과 정 명	기간	시간	횟수	일수	인원	비고
원격 직무 연수	1	놀이중심 교육과정운영지원 원격연수 상시과정	4.4.~12.16.				300	
	2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원격 직무연수 1기	4.4.~5.27.				300	
	3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원격 직무연수 2기	10.24.~11.25.				140	
계					3		740	

※ 위 연수계획은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경 운영될 수 있음.

담당부서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담당자	교육연구사 김경희 교육연구사 강옥선	전화번호	063) 830-5411 063) 830-5412

◩ 행복을 더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가.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나눔과 행복 지원

□ 추진 목적

❍ 교육과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역량 강화
❍ 맞춤형 대여사업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 활성화 지원

□ 추진 근거

❍ 2022년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계획

□ **추진 방향**

❍ 교육과정 지원 선생님의 향기 수첩 및 자료개발 책자 보급

❍ 대여실 운영

□ **추진 내용**

❍ 선생님이 행복한 교실을 지원하는 자료 개발·보급

- 지속가능한 유아 환경교육 콘텐츠 확장 교육과정 지원 자료 개발·보급
  - 보급시기: 2022년 하반기
  - 보급대상: 교원, 학부모, 유아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교육가족
  - 보급부수: 통합 콘텐츠로 홍보·보급
- ‘2023 선생님의 향기’ 제작·보급
  - 보급시기: 2022. 하반기
  - 보급대상: 공·사립유치원 교원
  - 보급부수: 2,100부
  - 수록내용: 유아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등

❍ 행복한 수업을 지원하는 놀이중심 자료 대여 사업

- 놀이체험 교육과정지원 자료 현장 대여
  - 대여신청: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누리집(https://office.jbedu.kr/jb-i)
  - 대여방법: 택배(택배비 본 원 지원) 또는 직접 수령 중 선택
  - 대여물품: 교재교구(60종), 의상(181종), 행사용품(83종)

담당부서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담당자	교육연구사 강옥선	전화번호	063) 830-5412

나.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부모교육

□ 추진 목적

❍ 올바른 육아정보 제공으로 바람직한 자녀교육관 정립

❍ 부모·자녀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 **추진 근거**

❍ 2022년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계획

□ **추진 방향**

❍ 부모와 자녀가 놀이로 하나 되는 부모교육 운영

❍ 홈페이지를 통한 육아정보 제공

□ 추진 내용

❍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및 모험놀이 한마당 운영

- 기　　간: 2022년 4월~12월(5회 운영)
- 장　　소: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 대　　상: 공·사립유치원 유아와 부모 200가족
- 내　　용: 유아 성장을 지원하는 부모교육 및 모험놀이터 체험
- 체험신청: 누리집(https://office.jbedu.kr/jb-i)에서 신청

❍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육아정보 제공

- 대　　상: 공·사립유치원 부모 및 예비부모
- 내　　용: 다양한 육아정보, 유아환경교육 콘텐츠 제공
- 방　　법: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누리집 탑재

담당부서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담 당 자	교육연구사 강옥선 교육연구사 유경미	전화번호	063) 830-5412 063) 548-1188

■ 2022학년도 김제유아교육 주요 내용

월	주요 행사	시기	대상
1	· 2022학년도 김제유아교육 설명회	2월 중	공·사립
2	· 유치원 동아리 및 권역 구성	2월 중	공·사립
3	· 사립유치원 원비 및 돌봄 컨설팅	2월 중	사립
4	· 유치원 자율선택과제 운영	3월~12월	공·사립
5	· 마음모아 소통교실 운영	4월~11월	권역별
6	·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1~6차)	매월 3주 화요일	공·사립
	▸ 1차(4.19), 2차(5.24), 3차(6.21), 4차(9.20), 5차(10.18), 6차(11.22)		
7	· 신규 및 저경력 유치원 교사 나눔(1~3차)	4월, 6월, 10월	공립
8	· 유치원 현장중심 컨설팅 지원(상반기)	4.25.(월)~ 5.27.(금)	공·사립
9	· 유치원 현장중심 컨설팅 지원(하반기)	10.24.(월)~11.25.(금)	공·사립
10	· 2022. 김제유치원 찾아가는 놀이마당(상반기)	4.4.(월)~6.24.(금)	공·사립
11	· 2022. 김제유치원 찾아가는 놀이마당(하반기)	9.5.(월)~11.11.(금)	공·사립
12	· 수업(교육활동) 나눔 한마당	11월 중	공·사립
13	· 유치원 기관 평가(자체평가)	9월~10월	공·사립
14	· 2023학년도 유아 모집	10월~12월	공·사립
15	· 2022학년도 유아교육 평가 및 성찰	12월 중	공·사립

부 록

1. 출결관리
2. 학적관리
3. 생활기록부
4. 유치원 규칙
5. 유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 계약제교원 임용
7. 각종 위원회 및 비치 장부
8. 교직원 의무 연수

1. 출결 관리

○ 업무 흐름도

지침 확인 ⇒ 기 록

○ 세부 업무 내용

세부업무명	주 요 내 용	
지침확인	관련근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유아학비지원계획 ▸유치원규칙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확인 ▸수업일수 및 출석 일수에 관한 사항 ▸결석에 관한 사항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 처리 내용	
기록	① 출석부에 출결 상황 기재 → 월별 마감 → 결재 ② 출석인정 결석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가정체험학습 등'으로 인한 결석 ▸경조사로 인한 결석 ③ 무단결석 유아 관리 ▸결석당일: 결석 사유 확인 → 지속적인 연락 → 무단결석 유아 조치 결과 작성 ▸결석2일 이상: 출석 여부 확인 → 가정방문* 실시 또는 가정방문 결과 아동 학대가 의심되거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 → 무단결석 유아 조치 대장 작성, 교육청 보고 * 학교 교직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직원 2인 동행 ④ 장기결석 관리 ▸장기결석 신청서 작성 및 결과 기안 후 처리 ▸행정실 및 식생활관과 정보 공유 ▸출석부 기재, 7일 이상(공휴일 제외) 장기결석은 생활기록부에 사유 기재 tip ▸출석부는 유치원 보조 장부 ▸유치원은 나이스 출결 시스템이 없음, 종이 출석부를 사용하고 결재를 받은 후 보관	
	참고자료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2020) ▸출석부 기재 요령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장기결석 신청서 ▸무단결석 유아에 대한 관리·대응 매뉴얼 ▸무단결석 시 정보제공 및 가정방문 동의서(유아모집 서류 참조) ▸무단결석 유아에 대한 조치 결과 관리대장

2. 학적 관리(입·퇴학, 전·출입)

○ 업무 흐름도

입 학·전 입 ⇒ 퇴 학 · 전 출 ⇒ 기 록

○ 세부 업무 내용

세부업무명	주 요 내 용	
입 학 · 전 입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 제14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업무절차) 입학원서 작성 → 생활기록부, 출결사항 송부 요청 → 유아 전·출입 대장 작성 → 행정실 및 식생활관 정보 공유 → e-유치원 시스템 등록 및 확인 tip <어린이집에서 입학한 경우> ▸ 자격변동 신청에 관해 안내한 후 e-유치원 시스템에 등록 ▸ 자료 송부 요청 없이 생활기록부 새로 작성	
퇴 학 · 전 출	(업무절차) 퇴학신청서 작성 → 전출한 유아의 유치원에서 송부 요청을 받은 후 생활기록부, 출결사항 송부 → 유아 전·출입 대장 작성 → 행정실 및 식생활관 정보 공유 → e-유치원 시스템 퇴학 처리 및 확인	
	참고자료	▸ 유치원생활기록부 송부 요청 기안 ▸ 유치원생활기록부 송부 기안
기 록	유치원생활기록부에 반영하여 학적 기록 ▸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등 이동 상황 기입	

3. 생활기록부

○ 업무 흐름도

준 비 ⇒ 입력 및 정정 ⇒ 자료 보존 및 활용

○ 세부 업무 내용

세부업무명	주 요 내 용	
준 비	관련근거	▸유아교육법 제14조, 제1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①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입학 또는 전입 서류 구비 ② 작성자는 당해 학년도 담임, 업무 담당자가 수합 후 처리 원칙	
	참고자료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입력 및 정정	① 입력사항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유아발달상황 ▸고시된 서식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입력란이 부족할 시 추가 가능 ▸보조기록부(입학원서, 출석부, 신체검사 결과표, 평가자료 등) 활용하여 입력 ② 생활기록부 등록 ▸모든 항목 작성 후 학년이 종료됨과 동시에 K-에듀파인(업무관리)에 등록 ▸결재 기안 시 유아의 생활기록부를 붙임 문서로 첨부 ③ 정정 ▸해당 학년도 이전의 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 금지 ▸정정사유를 발견한 해당 학년도의 담임교사가 정정 ▸증빙서류 원본은 정정대장에 학년도별로 철하여 준영구 보관	
	참고자료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생활기록부 색인 목록 ▸생활기록부 작성 결과 보고 기안 ▸생활기록부 정정 기안 및 대장
자료 보존 및 활용	① 준영구 보존 ▸K-에듀파인(업무관리)에 비공개, 공개제한 6호, 영구(직원 열람제한)로 결재 ▸생활기록부 출력물은 유아가 졸업(수료) 한 후 5년 동안 보존·관리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 폐기 ② 송부처리 ※ 학부모 동의 필요 ▸전출유치원에서 생활기록부 원본파일을 전입유치원에 송부 ▸유아가 입학한 기관장의 요청 시 송부	
	참고자료	▸자료 송부 요청 기안(학적관리 참고)

4. 유치원 규칙

○ 업무 흐름도

기재사항 ⇒ 제 · 개정 절차

○ 세부 업무 내용

세부업무명	주 요 내 용	
기재사항	관련근거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유치원규칙 기재사항 내용 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제6호·제6호의2·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참고자료	▸유치원규칙(예시)
개정절차	① 유치원규칙 제 · 개정 협의회 구성 ② 규칙개정 내용에 대한 유치원 구성원 의견 수렴(학부모, 교직원) ③ 시안에 대한 교무회의 심의 후 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④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심의 및 최종안 확정 ⑤ 규칙 공표(유치원홈페이지 탑재, 정보공시, 교무회의 안내) tip ▸유치원규칙을 처음 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또는 그 밖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참고자료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안 ▸규칙개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5. 유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업무 흐름도

계획 수립 ⇒ 예방·관리 ⇒ 발생 보고 및 대응 활동

○ 세부 업무 내용

세부업무명	주 요 내 용	
계획 수립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8조, 제14조, 제14조의3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2021.3.1.)
	① 유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매년 3월 말까지) ② 유치원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매년 3월 말까지): 구성원 명단 및 역할 명시, 비상 연락망 확보 ③ 감염병 예방 교육 연간 계획 수립: 유아 빈발 감염병을 중심으로 교육 대상(**유아**, 학부모, 교직원 등), 내용, 자료,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수립 ④ 방역 물품 구비 및 관리: 물품별 비축 기준 확인 및 담당자 지정, 유효기간 점검 ▸ 소독 및 방역 실시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역업체 선정·계약 ⑤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계획 tip **초등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및 조직 구성 시 병설유치원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② 지역사회 내 시·군 보건소 등 방역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참고자료	▸ 유아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16)
예방·관리 활동	① 감염병 발생 현황 감시 및 통계관리를 통한 유행 감시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https://www.schoolhealth.kr/)- '학생 감염병 감시정보' 활용 ② 유치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관리(권장) ③ 유아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를 통한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치료 ④ 유아,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⑤ 유아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 연 1회 이상 ▸ 감염병 유행 시나리오에 따른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및 구성원 간 역할 명시, 감시 및 보고체계, 필수 방역물품 구비현황 등에 대해 점검 ⑥ 필수방역물품 비축현황 확인 및 권장 사항에 따라 구비 ▸ 모든 방역물품은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관리 ⑦ 방역(소독) 실시: 정기 소독, 임시 소독, 보건실 소독, 일시적 관찰실 소독 ▸ 방역(소독)은 「학교소독지침」을 준수하여 실시	
	참고자료	▸ 유아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16)

세부업무명	주 요 내 용
발생보고 및 대응활동	① 감염병 발생 감시 및 보고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사실을 원장과 교육(지원)청에 보고함 ▸신고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인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감염병 발생 보고 체계 > ❖ **최초보고**: 감염병 환자발생 직후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동시 보고 ▪ 도교육청: 정책공보관실(학생안전관리지원단) 이메일(jbe119@jbedu.kr)로 자료 발송 후 유선통화(☎ 239-3119) ▪ 교육지원청: 메신저, 유선전화(인성건강과), 팩스 활용 ❖ **서면보고**: 역학조사 실시 직후 및 최종 결과(감염병 완치 등)를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동시 보고 ▪ 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수신자: 정책공보관) ▪ 교육지원청: 업무관리시스템(수신자: 교육장, 부서 미지정) ② 보건소 신고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고절차 준수 및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유아 및 교직원) ③ 감염병 발생에 따른 확산 차단 활동 강화 ▸감염병 환자 및 의심증상자 신속한 격리 및 등원 중지 실시 ▸감염병 발생 학급 및 연령 대상 능동감시 실시 ▸예방접종력 확인 및 미접종자 접종 안내 ▸유아, 학부모, 교직원 대상 감염병 교육 및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방역물품 비치 및 구비 ▸환경 소독 및 환기 실시 ▸보건학적 고위험군 관리
참고자료	▸2020학년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전라북도교육청, 2020) ▸유아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16) ▸감염병 발생 보고(서식)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2021.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정감염병 4개급 87종(제1급 17종, 제2급 21종, 제3급 26종, 제4급 23종)

구분	1급 (17종)	2급 (21종)	3급 (26종)	4급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마.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 간염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저.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6. 계약제교원 임용

○ 업무 흐름도

계 획 ⇒ 임용절차 및 구비서류 ⇒ 평가 및 퇴직처리

○ 세부 업무 내용

세부업무명	주 요 내 용	
계 획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3조, 제27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교원 정원 수급 현황 및 복무현황 파악 : 휴직자, 복직자, 파견근무, 자격연수 대상자, 병가, 출산휴가 등 ② 계약제교원 채용 계획 수립 ▸ 자격요건,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채용일정 등 ▸ 임용 상한연령: 만62세 이하(강사는 만65세 까지 채용 가능) ▸ 기간제교사의 경우 6개월 이상 임용은 공고 최소 7일 전(휴일포함) 도교육청 홈페이지 채용 계획(채용 절차, 공고일, 채용인원, 채용기준 등) 사전공개 의무 ③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 원감, 담당 부장교사, 동연령 등 유치원별 여건을 고려하여 4~5명으로 구성 tip **<계약제교원 채용 시 주의사항>** ▸ 1차 공고(4일 이상)는 인력풀 등재자만 지원 가능 ▸ **기간제교원 채용 시 명예퇴직교원은 원칙적으로 채용 금지** - 1차, 2차 공고 마감 후에도 지원자가 없고 부득이한 경우, 해당 유치원에서 공문으로 채용 사전 승인 받아 명예퇴직교원 채용 가능**(요청서에 특정인 지명 금지)**	
	참고자료	▸ 2021년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 2021년 전라북도교육청 유치원 계약제교원 인력풀 운영 계획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강사)채용계획 기안문(예시) 1. 계약직교원 채용계획(예시) 2.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사전공개(예시) 3.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문(예시) 4. 지원자 응시서류(예시) ▸ 명예퇴직교원 채용 사전승인 요청 공문(예시): 사전협의 요청서

세부업무명	주 요 내 용

임용절차 및 구비서류

① 임용절차

정규 교원의 결원 발생

⇩

기간제교원[1월(曆)또는30일이상]	강사(30일 미만)
⇩	⇩
채용 계획 수립 및 사전공개 [붙임1 참고] (6개월 이상부터 공고 전 도교육청 홈페이지 **사전공개 활용**)	임용권자가 공고 또는 수의계약 여부 결정 (강사는 만65세까지 임용 가능) 공고 시 기간제교원과 절차 동일 (강사는 채용 계획 사전공개 대상 아님)
⇩	
채용 공고 [붙임1 참고] [1차 : 4일 이상(휴일 포함) 인력풀과목일 경우 등재자만 지원가능] 도교육청, 지원청 홈페이지 공고 의무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활용 가능 ※지원서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중심, 현장 접수 지양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2가지로 양식 통일)	
⇩	⇩

서류심사 / 면접 / 수업실연(교수교과 6개월 이상 임용 시는 의무)

⇩

채용대상자 결정(전형 결과 내부결재) 및 통지

⇩

계약 및 임용
결격사유,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

발령대장 정리 **나이스 등재** (나이스>교원인사>계약직인사기록)	**발령대장 정리** (시간강사는 주당 수업시수 또는 총 수업시수를 반드시 기재)

② 임용 시 구비서류

구분	기간제교원	강사
구비 서류 (계약 제교원)	①교원자격증사본 ②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③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④경력증명서 ⑤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⑥평가동의서 ⑦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①교원자격증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②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③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④경력증명서(필요시) ⑤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⑥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구비 서류 (학교)	**⑧결격사유조회(행정처분) 회신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⑨호봉획정표** **⑩결격사유조회(형사처분)회신서 (3개월 초과 임용시)**	**⑦결격사유조회(행정처분) 회신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세부업무명	주 요 내 용
임용절차 및 구비서류	③ 발령대장 정리(기간제교원, 강사) ④ NEIS 등재(기간제교원) ▸NEIS>교원인사>계약직 인사기록 ▸기간제교원 퇴직 예정일 등록 tip <계약제교원 선발전형 시 주의사항> ▸채용심사위원 중 후보자와 친·인척, 사제 관계 등에 있는 자 참여 제한 ▸유치원에서 채용 시 인력풀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결격사유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성범죄경력 조회 반드시 실시 ▸신청인이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 반환요구서류 발송
참고자료	▸채용심사결과 기안문(예시) 1. 접수대장(예시) 2. 채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집계표(예시) 3. 서류심사, 면접심사, 수업실연 평가표(예시) 4. 서류심사, 면접심사, 수업실연 집계표(예시) 5. 심사위원 서약서(예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기안문(예시) ▸결격사유 조회 기안문(예시) ▸임용요구 기안문(예시) 1.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강사) 채용계약서 2. 호봉획정표 3.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임용서류 제출확인서(예시) ▸임용보고(교육지원청) 공문 (예시) ▸나이스 인사기록 등록 절차
평가 및 퇴직처리	① 임용종료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퇴직(계약만료 30일 전 퇴직 통보) ▸1년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인사자문위원회 적격 여부 판단 후 내부결재를 통해 연장 채용 결정) ② 기간제교원 평가 ▸평가주체: 단위학교 교장 ▸평가대상: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 ③ 퇴직처리 ▸NEIS상 계약제교원 퇴직처리(기간제교원) tip <계약제교원 재임용 시 주의사항> ▸임용연장 조건: 다음 3가지 모두 충족 시-최초 채용 시 공개전형, 기간의 단절이 없고, 동일 결원 교사일 경우 가능(사유는 달라져도, 동일 결원 자리이어야 함)
참고자료	▸임용기간 만료통보 기안문(예시) - 임용기간 만료통보(예시) ▸계약직교원(기간제교원) 퇴직처리 ▸근무평가 실시 기안문(예시) 1. 평가 동의서(예시) 2. 기간제교원 근무평가서(예시) ▸계약연장 기안문(예시) 1. 기간제교원 근무평가 집계표(예시) 2. 인사자문위원 회의록(예시) ▸계약제교원운영지침

7. 각종 위원회 및 비치 장부

○ 업무 흐름도

위원회 및 비치장부 확인 · 정리 ⇒ 위원회 운영 및 비치장부 관리

○ 세부 업무 내용

세부업무명	주 요 내 용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근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정부조직법 제5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 법령 입안 · 심사 기준(법제처)

① 각급학교 각종 위원회 종류: 총 27개(학교운영위원회 등)

②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

▸ 법정위원회는 다른 법정위원회와 통합 운영 불가

- 다만, 법령*에 다른 위원회와 통합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된 위원회는 다른 법정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 법령: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조례 · 규칙

☞ 예시) 학교운동부 육성 · 지원위원회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비법정위원회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법정위원회 또는 비법정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 통합 운영 규정 제정 또는 개정

- (제정) 학교에 통합 운영 규정이 없는 경우

☞ 학교별 여건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 마련 [붙임 3] 참고

- (개정) 기존 통합 위원회에 타 위원회를 통합 또는 분리 운영하는 경우

☞ 제정된 규정에 조직, 기능, 구성 등 필요사항을 포함

< 통합 위원회 회의 진행방법(예시) >

1. 회의 개최	2. 회의 진행	3. 회의록(결과) 작성
• **[통합 위원회 간사]** 관련 위원회 안건을 취합하여 회의 일정 안내	• **관련 위원회별 협의 및 심의** **예시) (가칭) 학교교육과정위원회** ① 학교평가위원회 안건 협의 ②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안건 협의 ③ · · · 추가 협의 • **(관련 위원회별 간사) 안건별 회의 진행**	• **(관련 위원회별 간사) 위원장 및 학교장 결재 → 회의록 관리**

※ 관련 위원회 일부만 개최 필요 시 종전대로 개별적 위원회 운영 가능

세부업무명	주 요 내 용
	③ 회의록 작성 및 간소화 여부 [붙임 1], [붙임 4] 참고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 회의록 서식 1 -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제5호) ☞ 예시) 초·중등교육법(개별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제9호) ☞ 예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회의록 작성 필요 ▸회의록 간소화 대상: 위의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 이외의 회의 ☞ 회의록 서식 2
	참고자료: ▸각급학교 각종 위원회 [붙임 1]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예시) [붙임 3] ▸회의록 서식 [붙임 4]
비치장부 관리	① 비치장부 종류: 총 33개(졸업대장 등) ② 비치장부 관리방법: 시스템 또는 종이장부(출력물)
	참고자료: ▸각급학교 비치장부 [붙임 2]

8. 교직원 의무 연수

순	교육명	횟수·시간	관련근거 및 교육방법	운영방법	담당부서
1	안전교육	3년마다 15시간 이상	■ 교직원 등: 3년 15시간 이상(2021.3.~2024.2.) ■ 3년 미마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 6개월마다 2시간 이상 ■ 교육활동참여자: 연간 1회 이상	원격 집합	정책공보관
2	청렴교육	연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 신규임용자 및 승진자 등인 경우 대면교육 필수	원격 집합	감사관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연1회 이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공직자 등에게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원격 집합	
4	행동강령교육	연1회 이상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 신규 임용, 교감 및 사무관 승진(예정)자 등은 교육 필수	원격 집합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연1회 이상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채용 시 교육 필수	원격 집합	
6	교권보호교육	연1회 이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원격 집합	교원인사과
7	장애인식개선교육	연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 대상: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원격 집합	교육혁신과
8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연1회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 의무 관련 교육	원격 집합	
9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연3시간 이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9)** ■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실시일이 다를 경우 최소 4시간)	원격 집합	인성건강과
10	성폭력예방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 각 교육별 대면교육 필수	원격 집합	
11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 각 교육별 대면교육 필수	원격 집합	
12	성매매예방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 각 교육별 대면교육 필수	원격 집합	
13	개인정보보호교육	연1회 2시간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각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교직원은 연1회 2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이수	원격 집합	미래인재과

순	교육명	횟수·시간	관련근거 및 교육방법	운영방법	담당부서
14	정보보안교육	연1회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 ▪각 기관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1회 정보보안 교육 실시	원격 집합	미래인재과
15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	원격 집합	민주시민 교육과
16	가정폭력예방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 각 교육별 대면교육 필수	원격 집합	
1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원격 집합	
18	자살예방 교육	연6시간 이상 권장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 생명존중의 중요성,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 자살 위기자에 대한 상담 방법 등을 교육	원격 집합	
19	인권교육	연2회 이상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31조 ▪ 교직원 대상 각종 연수에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편성	원격 집합	
20	다문화이해교육	연2시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0조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원격 집합	
21	통일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 ▪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	원격 집합	
22	인성교육	연4시간 이상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인성교육의 개념, 목표와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교원연수 계획 수립	원격 집합	
23	소방훈련·교육	연2회 이상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실시 (단, 합동훈련 제외 대상기관은 자체훈련으로 대체)	집합	총무과
24	사회복지교육	연4시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 ▪사이버교육, 헌혈, 사회봉사활동(지방공무원에 해당)	원격 집합	
25	학교석면 안전교육	연2회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교육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집합교육 실시 (석면 보유학교)	원격 집합	시설과
26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교육	연1회	▪설비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해당 학교)	원격 집합	
추가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 교육공무직원	원격 집합	교육혁신과
추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대상: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원격 집합	
추가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과의존 예방교육)	연2회 이상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1항 및 3항	원격 집합	미래인재과

※ 교직원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원격연수로 개설(전북교육연수원)하여 운영(공·사립 교직원)
※ 이외 의무연수가 있을 시 해당 업무 부서에서 안내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출처: 2022 주요업무계획

2022학년도 김제유아교육계획

2022년 2월 일 인쇄

2022년 2월 일 발행

발행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